

법과 정치

PiaTe Summarization Note

Reference

- 서적
 - 김왕근 외 5인 저, 천재교육 「고등학교 법과 정치」 (2007 개정)
 - 최적 저, 「수능개념 The 법과 정치」
 - 신형민 외 5인 저, EBS 「수능특강 법과 정치」
 - 김준연 외 5인 저, EBS 「탐스런 법과 정치」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읽기 전에

- 해당 문서는 무료배포 된 문서입니다.
- 절대 이게 어딘가에서 유료로 팔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걸 돈 내고 다운받으셨다면 환불받으세요.
- 이 문서는 오르비스 옵티무스를 포함한 2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와,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이 문서의 재배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INDEX

| | |
|---------------------|-----|
| I. 민주 정치와 법 | 1p |
|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 |
| 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 |
| 3. 민주 정치의 발전 | |
| 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 |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9p |
|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 |
| 2. 정치 참여와 선거 | |
|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 |
| 4. 여론과 정치 문화 | |
| III. 우리나라의 헌법 | 24p |
| 1.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
| 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
|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 |
| IV. 개인 생활과 법 | 40p |
| 1. 민법의 기초 이해 | |
| 2. 계약과 불법 행위 | |
| 3. 개인 간의 분쟁 해결 | |
| 4. 생활 속의 법 | |
| V. 사회생활과 법 | 51p |
| 1.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 |
| 2.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 |
| 3.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 |
| 4. 소비자의 권리와 법 | |
| 5. 근로자의 권리와 법 | |
| VI. 국제 정치와 법 | 64p |
| 1. 국제 사회의 이해 | |
| 2. 국제 관계와 국제법 | |
| 3. 국제 문제와 외교 | |

I. 민주 정치와 법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3. 민주 정치의 발전
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기능, 성격

· 정치의 의미

| | |
|--------------|--|
| 좁은 의미 | ·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
| 넓은 의미 | · 개인·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조정·해결 과정,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 |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 | |
|---------------|---|
| 국가 현상설 | · 정치는 국가 고유의 현상,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에 한정 ·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 독점 · 정치의 좁은 의미(전통적 의미)와 연결 |
| 집단 현상설 | · 정치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남,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행위 ·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 · 정치의 넓은 의미(현대적 의미)와 연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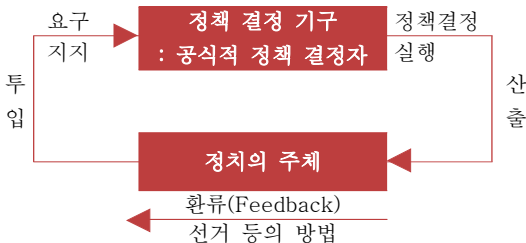
· 정치의 성격

- 양면성 :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데에서 비롯
정치적 쟁점에는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가치가 동시에 들어 있음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인 정치는 그 자체로 양면성 지님.
- 권력성 : 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이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게 됨
- 민주 정치의 본질 : 모든 정치행위는 양면성과 권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갈등·대립 초래
→국민의 자발적 지지·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정치의 기능 : 시대에 따라 변화

| | |
|---------------------------|---|
| 근대 초기(17c~18c) | 사회적 갈등 해결, 질서 유지 기능 → 국가를 전형적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방식과 관련 |
| 근대 시민 사회(18c말~20c) | 입법, 사법, 행정 작용 중심으로 정치의 기능 이해 →통치기관 or 권력기관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통제 중심으로 파악 |
| 현대 사회 |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의 정치 참여 활발 →이해관계 조정, 정부 정책 감시·비판, 정치적 의사 형성 등의 기능 생겨남 |
| 최근 | 규범적 기능 중시 *규범적 기능 : 국민적 합의·참여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삶의 질 평가 기준이 경제 수준에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바뀌면서 등장. |

· 정치 체계론



| | |
|--------------------|--|
| 공식적 정책 결정자 |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 기관 →산출 기능 담당 |
|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전문가, 일반 시민 등 →투입·환류 기능 담당 |

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1) 민주주의의 의미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Demos(다수, 시민) + Kartia(지배, 통치) = 다수의 지배
 - 자치 :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

| 플라톤의 정치형태 분류 | | |
|--------------|----------|---------------|
| 주권자 수 | 올바르게 실현 | 잘못 실현 |
| 1인 | 군주정 | 참주정(독재정, 폭군정) |
| 소수 | 귀족정 | 과두정 |
| 다수 | 민주정, 공화정 | 중우정(우민정) |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인간 존중, 자유, 평등 추구
 - ▷ 인간 존중 :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함
자연권 사상(모든 인간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 가짐)에 근거
초국가적 권리→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제한 불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 +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로 작용
 - ▷ 자유 :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

| | |
|--------|--|
| 소극적 자유 |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 18c) |
| 적극적 자유 | 참정권(국가에의 자유, 19c), 사회권(국가에 의한 자유, 20c) |

- ▷ 평등 : 누구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법 앞의 평등

| | |
|--------------------|-----------------------------------|
| 형식적 평등 (평균적 정의)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 기회의 균등 |
|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결과의 평등 |

-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민주적인 생활양식
 - 내용 : 타인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 다수결의 원리, 관용 정신

(2) 민주주의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 국민 주권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근거 +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정치 원리를 지향함을 의미
- 형성 : 왕권신수설 바탕의 군주주권론을 비판·극복하며 등장
- 실현 :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 국민투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주권 :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을 가지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

· 입헌주의의 원리

- 의미 :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것
- 목적 : 권력 제한 + 민주주의 이념 실현 → 자의적 권력 행사 방지 + 국민 기본권 보장
- 실현 : 법치주의(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권력 분립의 원리

- 의미 : 권력 기관을 상호 분리·독립시켜 견제→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권력 분립의 종류 | |
|--------------|--|
| 2권 분립(로크) | 입법권 + 집행권 (입법권 우위 강조),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에 영향 |
| 3권 분립(몽테스키외) |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 미국 대통령제 성립에 영향 |
| 수평적 분권 | 권력 기관 간의 권력 분립 |
| 수직적 분권 | 지방 자치제 |

(3)민주주의의 유형

·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국민 주권(선언적 의미)과 국민 자치(실현하는 구체적 수단)를 기본 원리로 함

| | | | | |
|----------------------------------|------------|---|---|--|
| 직접 민주주의 | 의미 | ·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 | | |
| | 기원 |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에서 기원 | | |
| | 장점 |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 · 주권자의 의사 왜곡↓ | | |
| | 단점 | · 비효율적, 중우 정치 발생 가능성 | | |
|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 의미 | ·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 구성 → 입법부에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 | | |
| | 등장배경 | · 국가의 규모와 기능의 확대 + 사회의 복잡성 · 다양성 · 전문성이 심화됨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 | |
| | 장점 | · 효율적 · 정책 결정의 전문성↑ | | |
| | 한계 | · 대표성 문제 : 대표 선출과 관련해 유권자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움 · 의회의 입법기능 수행이 어려움을 겪음+ 행정부 기능·역할 확대→대의 민주주의 훼손 우려 | | |
| | 보완책 | ·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도입 | | |
| 혼합 민주주의 | 의미 | ·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 혼합 ·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 | | |
| | 직접 민주주의 요소 | 국민투표 | <p>의미 ·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p> <p>레퍼런덤 · 헌법상 제도화된 국가 중요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헌법, 법률안, 주요 정책 등)</p> <p>종류 ·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투표</p> <p>플레비 사이트 · 영토 변경·병합, 집권자 신임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p> <p>·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투표 →전제적 지배 정당화 또는 쿠데타·혁명 등을 통한 새로운 정권 창출시에도 실시됨</p> | |
| | | 국민소환 |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의 발의로 파면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음(지방 자치제의 운용 원리 중 하나) | |
| | | 국민발안 | · 입법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 | 참여 민주주의 | 의미 | ·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대의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 |
| 전자 민주주의 | 등장배경 | ·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화 현상 + 정보 사회의 발달 | | |
| | 의미 | · 시민이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 | |
| | 장점 | · 공간적 제약 극복하고 자신의 의사 표출 가능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의 요건 마련 ·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절감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치권력 감시 · 젊은 세대의 참여 유도 가능 | | |
| 전자 민주주의 | 단점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여론 조작 가능 · 익명성 활용한 사이버상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 가능 · 사이버 포퓰리즘의 등장 가능성 · 정보 접근이 유리한 계층 중심으로 정책 결정시 대표성의 문제 야기 | | |

· 민주주의와 이념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 추구

But, 현실적으로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어려움→사회적 상황·역사적 배경에 따라 우선시하는 가치 달라짐

| | 자유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
| 의미 | · 자유·평등이 대립·충돌할 때 자유를 우선하는 민주주의 | · 평등을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민주주의 |
| 공통점 | 모두 민주주의 지향→절차와 방법 모두 민주적 | |
| 차이점 | · 자유→경쟁→차별적 결과→사회 문제 심화 · 개인의 권리 중시 | ·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 중시 ·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 중시 |

3. 민주 정치의 발전

(1)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 운영

| | |
|-----|---|
| 민회 | ·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 모든 시민으로 구성 |
| 평의회 | · 민회에서 처리한 업무 체계적으로 조직 및 일상적 행정 처리 · 민회에서 추천과 윤번제로 선출한 500인으로 구성 |
| 재판소 | · 각 부족에서 선출한 배심원으로 구성 · 다수결에 의한 재판 |

-특징

- ▷ 직접민주정치 실현 : 모든 시민에게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부여(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유지)
- ▷ 공직 담당자를 추천, 윤번제로 충원 : 시민이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공직 담당 가능
- ▷ 도련 추방제(Ostrakismos) : 국가에 해를 끼칠 만한 인물을 시민 투표를 거쳐 국외로 추방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가 추방의 도구로 악용

-한계

- ▷ 제한된 민주정치 : 시민의 자격을 자유민 성인 남성으로 한정(=여자, 어린이, 외국인은 자격 X)
- ▷ 중우 정치의 발생 : 언변이 뛰어난 다수에게 소수가 설득당해 잘못된 정책이 결정됨

·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 근대 시민 사회의 등장 :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타도하면서 등장
-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 | |
|----------------------|--|
| 천부 인권 사상 (자연권 사상) | · 인권의 불가침성·불가양성 천명→자유·평등 보장 중시+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인권 보장이 목적 |
| 계몽사상 | · 17~18c경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난 진보적 사회사상 ·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봄 |
| 사회계약론 | · 인간의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를 구성함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 |

| 대표적 사회계약론자 비교 | | | | |
|---------------|-----------|--|--------------------------------------|--|
| | | 홉스 | 로크 | 루소 |
| 차이점 | 공통점 | · 국가는 인위적 결합체 ·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수단 · 개인의 자율성 강조 · 이성 중시 · 국가 권력 제한 | | |
| | 인간 본성 | · 성악설 | · 성무선악설(백지설) | · 성선설 |
| | 자연 상태 | · 항상 혼란, 투쟁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안전 X | · 잠재적 투쟁 상태(자유롭고 평화로우나 투쟁이 일어날 수 있음) | · 목가적이며 자유롭고 평등, 평온한 상태 · 그러나 사유재산이나 불평등으로 인해 투쟁 발생 |
| | 국가 성립의 목적 | · 자기 보존 | · 재산권 보호 | · 각 구성원이 공동의 힘으로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필요 |

| | | | |
|------------|----------------------------|--------------------------|--|
| 계약 방식 | · 주권을 제3자(ex : 군주)에게 전부 양도 | · 주권을 일부 양도 | · 주권은 분할·양도 불가 · 자유 의사에 따름 · 일반 의지의 행사 |
| 주권이론 | · 군주 주권론 | · 국민 주권론(간접) · 저항권 인정 | · 국민 주권론(직접) |
| 지향하는 정치 형태 | · 전제 군주제 | · 입헌 군주제 | · 민주 공화정 |
| 특징 | · 왕권신수설로 군주의 절대권을 정당화함 | ·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 주장 | · 국민의 참여 강조 |

-대표적 시민 혁명

| | | |
|---------------------|----|---|
| 영국 명예혁명 (1688) | 원인 |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
| | 경과 | 의회의 제임스 2세 축출→권리 장전 승인 |
| | 결과 | 입헌 군주제 및 의회 정치의 기반 마련 |
| 미국 독립전쟁 (1775-1783) | 배경 | 국민 주권 및 입헌주의 사상 |
| | 경과 | 보스턴 차 사건→대륙회의 개최→독립 선언문 발표 |
| | 결과 | 세계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 탄생 |
| 프랑스 대혁명 (1789) | 원인 | 구제도의 모순,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 |
| | 경과 | 국민의회 구성→인권선언 채택 |
| | 결과 |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 극복, 시민계급의 사회 주도, 인권·자유 보장 명문화 |

-시민혁명의 결과 : 절대왕정 및 봉건제 타도,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권 장악,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시민혁명의 한계

- ▷ 참정권의 한계 : 부르주아의 참정권 독점→보통·평등선거 제약
- ▷ 기회균등의 한계 : 형식적 평등만 보장→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2)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 의회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보완
But 시민의 무관심 심화→민주정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함
- 참여의 의미 :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확대 방향

| | |
|-------------|---|
| 직접민주제 요소 도입 | · 지방 자치 수준에서의 주민 소환 제도 도입 등 |
| 전자민주주의 확대 | · 시·공간을 극복한 참여 및 양방향적 소통 가능 |
| 시민단체 참여 | · 개인 수준의 주권 행사보다 집단 수준의 주권 행사가 보다 정치적 효능감과 효과성을 기할 수 있음 |

· 사회 통합

- 필요성 : 세계화·정보화로 경제 성장, 정보 습득의 용이성 증대, 상호 작용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빈부격차, 정보격차, 문화충돌, 환경파괴, 사회적 가치의 충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킴
- 새로운 사회적 쟁점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증진, 녹색 성장, 다문화주의, 인권 보장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인권의 보장

- 민주 정치의 근본 목적 :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인권 침해의 유형
 - ▷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 :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 ▷ 국가 기관에 의한 침해

- 인권 보장 방향 :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된 인권의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인권 구제 방안
 - ▷ 입법적 구제 :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 ▷ 행정적 구제 : 청원, 국민 권익 위원회 활동
 - ▷ 사법적 구제 : 국가배상청구, 재판, 헌법소원심판
 - ▷ 최후의 수단 : 저항권

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1) 정치권력의 의미와 성격

· 정치권력의 의미와 특징

- 의미 :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작용하는 외부적인 강제력
- 특징
 - ▷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 형성
 - 계약적 상호 작용 : 계약 작용인 자발적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공권력 :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 지배 - 복종 관계의 유형

| | |
|-----------|---|
| 강압 | · 갈등 상황에서 지위, 재산, 나이, 성, 신체적 힘 등을 이용하여 상대가 복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
| 강제 | · 갈등 상황에서 복종 여부에 대한 상대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 |
| 권위 | ·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상호 작용을 통해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것 |
| 조작 | · 복종자 자신이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의 근거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종하게 되는 것 |

· 정치권력의 정당성

-정치권력의 정당

- ▷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 + 동의와 합의는 형식화된 법으로 규정
- ▷ 정치는 권력의 내용이고 법은 권력의 형식임
 - 정치가 인간의 권력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법은 권력적 상호작용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님
 - 법치주의의 원리가 요청됨
 - ∴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 행사 = 독재적 권력 행사 → 권력의 정당성 인정 X → 국민의 저항 불러일으킬 수 있음(ex : 4.19 혁명)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 | |
|------------|--|
| 합법성 | · 정치권력 행사의 형식적 근거 ·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법치주의 원리) · 합법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 도덕성 | · 정치권력 행사의 실질적 근거 · 정치권력 행사 의도가 헌법 및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및 사회 기본적 가치 등에 부합해야 함→어긋나면 비도덕적 · 국민의 도덕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 정치권력은 형식적인 근거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근거인 도덕성까지 갖춰야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민주 정치 과정에서 정당성 확보 방안

- ▷ 정치권력 획득 : 민주적 절차(ex : 선거)를 거쳐 획득
- ▷ 정치권력 행사 : 법에 근거하여 행사 + 정의, 민주적 이념, 사회적 가치에 합당하게 행사
- ▷ 정치권력 통제 : 제도적 장치 마련(ex : 도편추방제, 국민소환제, 탄핵심판 등)
-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치권력에 대한 대응 : 저항권 행사

| | |
|------------|--|
| 저항권 | · 기본권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자연권적 성격 가짐 ·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 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저항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

| | |
|------------------|--|
| 저항권 행사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침해의 중대성 · 헌법 침해의 명백성 · 최후 수단성 |
| 예시 | ·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미국 독립전쟁, 민권 운동 등 |

(2)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 법치주의

- 의미 :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
 -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에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 행정부의 집행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법은 권력 행사의 근거 + 권력 행사 통제 근거

-유형

| | |
|-----------------|---|
| 형식적 법치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절차나 형식 준수만 강조 · 법의 목적·내용은 신경쓰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당의 횡포나 통치권의 강화 수단으로 법이 작용하기도 함 |
| 실질적 법치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 → 형식적 합법성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실질적 정당성 확보 요구 · 실현 방안 : 위헌 법률 심사제, 권력 분립 제도, 탄핵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

-국가 권력과의 관계

- ▷ 입법부 :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
- ▷ 행정부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책 집행
- ▷ 사법부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실시

·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

- 민주 정치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별도로 한정할 것. 권력 행사의 근거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 국민이 뜻이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 → 법률은 곧 국민의 뜻
 - ∴ 법치주의 = 국민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 정치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
 - :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정치 성장 + 민주정치에 의해 법치주의 실현

|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 |
|-------------------------------|--|
| 법의 지배 (Rule by Law) | ·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 :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두가 법에 종속됨 |
|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 ·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함 · 전체주의 국가, 독재 정부, 군주국 등에서 볼 수 있음.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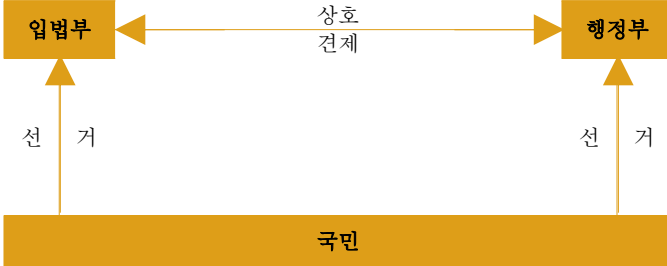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정치 참여와 선거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4. 여론과 정치 문화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 대통령제

- 의미 :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 성립 배경 : 미국 독립 과정에서 영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정부 형태를 추구하면서 형성
- 구성



-특징

| | |
|---------------------|--|
| 성격 | ·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 · 대통령·의회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 → 대통령·행정부는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는 책임지지 않음 ∴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 및 행정부의 의회 해산 모두 불가능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 행정부→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 법률안 재의결권 |
| | 행정부←입법부 ·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 · 탄핵 소추권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와의 관계 | 행정부→사법부 · 법관 임명권 |
| | 행정부←사법부 · 위헌 명령 · 규칙 심사권 · 항소권의 제한 |
| | 입법부→사법부 · 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
| 입법부←사법부 · 위헌 법률 심사권 | |
| 국가 원수 | · 대통령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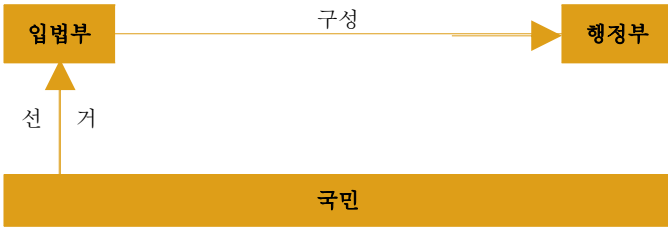
-장점 및 단점

| | |
|----|--|
| 장점 | ·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 : 탄핵, 임기 중 사망, 자진 사퇴 등의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는 임기를 끝까지 수행함 →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 강력한 리더십 구축 +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 |
| 단점 | ·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
| | ·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됨→독재 우려 ·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 시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음.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온전하게 다수당의 책임임) ·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갈등 해결 어려움 |

· 의원 내각제

- 의미 :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 형성 : 영국에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구성



-특징

| | |
|------------------------|--|
| 성격 | ·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형태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 ·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함 ·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내각도 법률안 제출 가능 |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 행정부 ↓ |
| | · 의회 해산권 : 발동 시 의회 해산 + 내각 총사퇴 |
| | 입법부 ↑ |
| | · 내각 불신임권 : 발동 시 내각은 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권 발동 중 선택할 수 있음 → 무엇을 선택 하든지 내각은 새로 구성됨 |
| 국가 원수 | · 국왕 또는 대통령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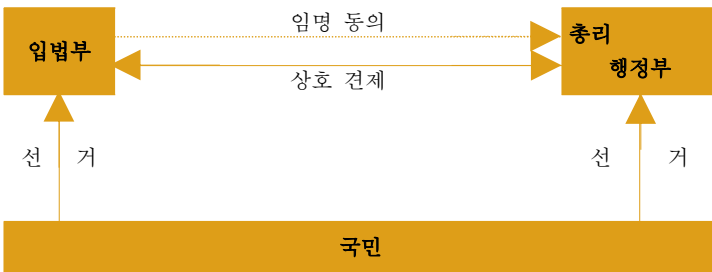
-장점 및 단점

| | |
|-----------|---|
| 장점 |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 의회와 내각의 협조 용이 →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이 빠르고 능률적 |
| 단점 |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의 혼란 우려 |

· 이원 정부제(프랑스식 대통령제)

-의미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정부 형태

-구성



-특징

▷ 이원 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특징

-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됨
- ▶ 의회 해산권을 가짐
- ▶ 의회의 내각 불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평상시에는 외교·국방 등만 담당하나 비상시에는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 총리를 임명(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

▷ 이원 정부제에서의 총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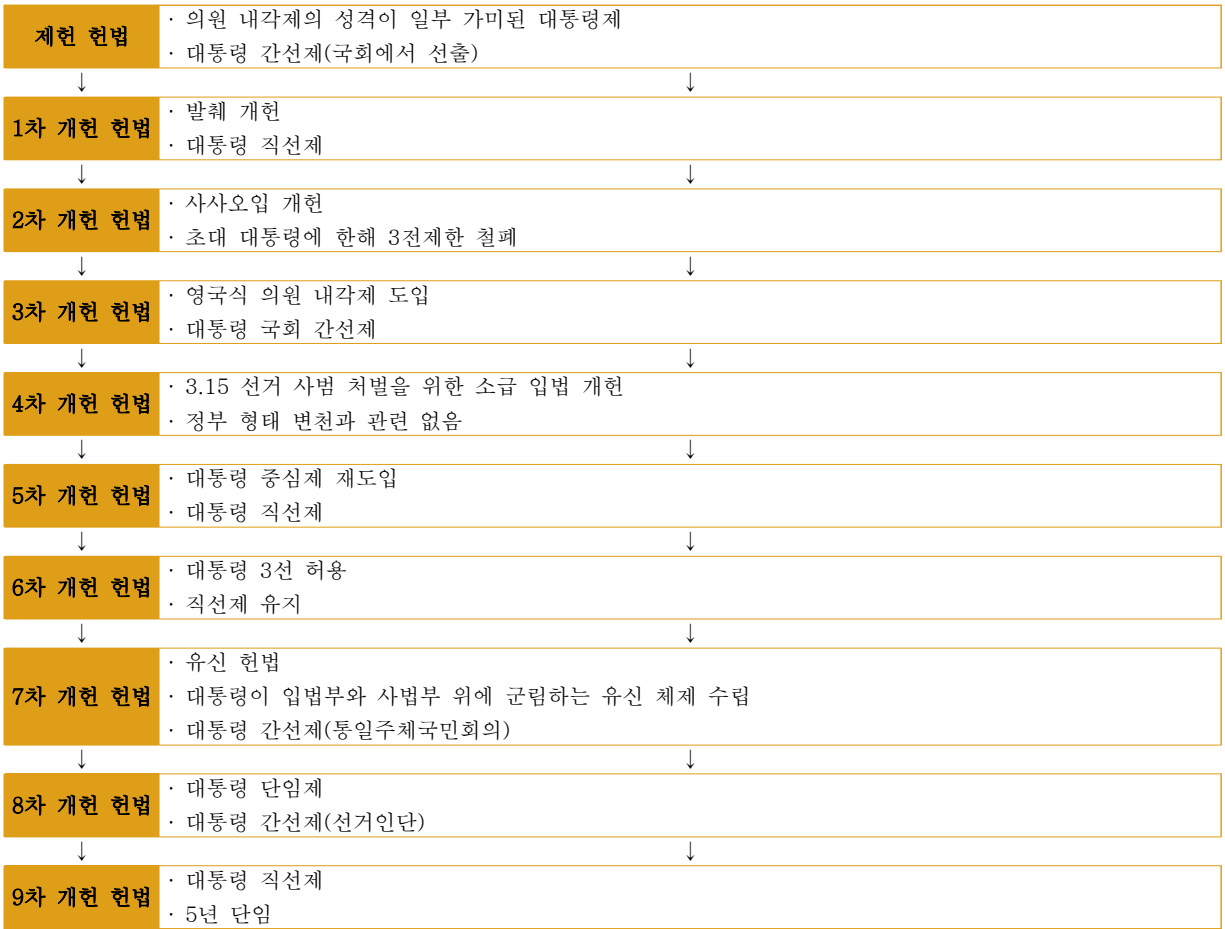
- ▶ 일반적인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 평상시에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 행사
- ▶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 여소야대 현상 발생 시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음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대통령제

·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 특징

- 총리의 존재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함
- 국무 회의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
-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의의

-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및 민주 정치의 의상 구현
- ▷ 시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민주 정치 발전

-중요성

- ▷ 국민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운영되게 함
- ▷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 부여
→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을 줌

-기능

- ▷ 주권 의식 신장 :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식 학습 + 주권의식 신장 가능
- ▷ 시민 의식 증진 : 시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 공익 증진, 정치 발전에 기여
- ▷ 대표자 감시와 통제 : 정부의 자의적 정책결정·집행 방지+정책의 정당성 제고+부정부패 예방
- ▷ 대의 민주 정치 보완 : 시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투입→정치적 무관심·시민의사 왜곡 방지

· 정치 참여의 방법

-정치 참여의 의미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자발적인 활동

-정치 참여의 유형

- ▷ 참여 주체의 범위에 따른 구분

| | |
|---------------|---|
| 개별적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참여 · 공무담임권 행사 · 정치에 대한 토론 · 국가 기관에의 청원 ·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기 |
| 집단적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나 이익 집단 활동 · 시민단체 활동 · 집회 또는 시위 참여 등 |

▷ 참여 방법에 따른 구분

| | |
|-------------------|---|
| 선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 · 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기 -지지자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 참여 -직접 출마 등 |
| 시민운동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
| 인터넷을 통한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과 의사 표출 용이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 활발 · 전자 민주주의 구현 |

(2) 선거와 민주 정치

· 선거의 기능과 의의

-선거 :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

-기능

- ▷ 대표자 선출
- ▷ 대표자 및 정치권력 통제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 정부의 자의적 정책 결정·집행 방지→책임 정치 실현의 수단
-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 ▷ 여론의 반영

▷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

▷ 주권의식 향상 : 선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임을 확인→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 민주선거 4대원칙

| 원칙 | 의미 |
|-------|---|
| 보통 선거 | ·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성별·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짐 · 반대 의미 : 제한 선거 |
| 평등 선거 | ·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표의 등가성 원리 · 반대 의미 : 차등 선거 |
| 직접 선거 | · 유권자 자신이 직접 대표자 선출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방식,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도 직접선거의 한 형태 · 반대 의미 : 간접 선거 |
| 비밀 선거 | ·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리지 않는 제도 · 반대 의미 : 공개 선거 |

· 선거구제

-선거구 :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획정 기준 : 인구에 비례 or 지역·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 법에 따라 선거구를 제정하도록 함(공정한 선거구 획정 위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있음

▷ 선거 공영제 :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 국민에 대한 선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함

(국회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9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

-선거구제

| | | |
|--------|----|--|
| 소선거구 | 의미 | · 1개 선거구당 1명의 대표 선출 |
| | 특징 | · 다수당에 유리 → 양당제 촉진 · 지역적 인물의 당선가능성 높음 |
| | 장점 | · 선거 관리가 용이함→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감 ·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쉬움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 |
| | 단점 | ·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움 · 지역주의 폐단 발생 우려 ·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 유리 |
| 중·대선거구 | 의미 | ·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 선출 |
| | 특징 | · 군소 정당에 유리 ·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 4공·5공 시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
| | 장점 | · 사표가 줄어들음 · 선거 과열 가능성 ↓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 |
| | 단점 |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가능성 · 후보자 난립 가능성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 정치적무관심 유도 및 투표를 저하 가능성 · 후보의 전국적 지명도만으로 당선 가능성 높음 ·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감 |

· 대표 결정 방식

| 다수대표제 | 의미 | ·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 | | | | | | | | | | |
|--------------|--|--|------|---|---|---|---------|-----|-----|-----|---------|-----|---------|
| | 특징 | ·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 ·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에 유리 | | | | | | | | | | | |
| | 상대다수대표제 | · 무조건 최다 득표자가 당선 ·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 우려 (예 : A후보 35%, B후보 34%, C후보 31% 득표 → A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지만 A 당선(대표의 역설)) | | | | | | | | | | | |
| | 절대다수대표제 | · 무조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 →대표성 ↑ · 예시 :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 -결선투표제 | | | | | | | | | | | |
| | 분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후보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A</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B</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C</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득표율(1차)</td> <td>35%</td> <td>34%</td> <td>31%</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득표율(2차)</td> <td>45%</td> <td>55%(당선)</td> <td>1차탈락</td> </tr> </tbody> </table> <p>▷ 1차 투표에서는 1위지만 결선투표에서 낙선 가능→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호투표제</p>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유권자는 출마한 후보 모두 대상으로 지지순위 표기 </div> <pre> graph TD Q1[1순위 과반 득표자가 있는가?] -- Yes --> A[당선자 확정] Q1 -- No --> B[최저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배분] B --> Q2[1순위 과반 득표자가 있는가?] Q2 -- Yes --> A Q2 -- No --> B </pre> | 후보자 | A | B | C | 득표율(1차) | 35% | 34% | 31% | 득표율(2차) | 45% | 55%(당선) |
| 후보자 | A | B | C | | | | | | | | | | |
| 득표율(1차) | 35% | 34% | 31% | | | | | | | | | | |
| 득표율(2차) | 45% | 55%(당선) | 1차탈락 | | | | | | | | | | |
| 장점 | · 당선자 선정이 쉽고 간편함 ·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 → 주요 정당의 다수 의식 확보로 정국 안정 | | | | | | | | | | | | |
| 단점 | ·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불참 → 투표율 하락 · 많은 사표 발생 · 소수의견 무시 우려 | | | | | | | | | | | | |
| 소수대표제 | ·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 당선 · 중·대선거구제와 결합 | | | | | | | | | | | | |
| 장점 | · 소수파의 의회 진출 유리 → 다양한 의견 반영 가능 | | | | | | | | | | | | |
| 단점 | ·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소요 | | | | | | | | | | | | |
| 비례대표제 |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결정 | | | | | | | | | | | | |

| | | |
|--------------|-----------|---|
| | 장점 | · 사표 감소, 정당정치 구현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정국 불안정 우려 |
| | 단점 | · 방법·절차가 다양하고 복잡 · 우리나라와 같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 직능대표제 | 의미 | · 직업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 |
| | 장점 | · 직업별 이해관계 정책에 반영 |
| | 단점 | · 집단 이익 대표 우려 |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 구분 | 선출직명 | 임기 | 선출방식 | 정당공천여부 |
|---------|--------------|-----------|--------------------------|------------------|
| 대통령선거 | 대통령 | 5년/단임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 |
| 국회의원총선거 | 국회의원 | 4년/중임O |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지역구246명) | ○ |
| | |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국구54명) | |
| 지방선거 | 광역지방 자치단체 | 단체장 의회 | 시장/도지사 | ○ |
| | | | 시/도의원 | ○ |
| | 기초지방 자치단체 | 단체장 의회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시/군/구의원 | ○ |
| | 교육감 | 교육감 | 4년/3연임까지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의 변천

▷17대 총선 이전 : 1인 1표식 비례대표제

문제점① 어느 유권자가 A당의 갑에 투표한다면 그 유권자가 A당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직접선거 원칙 위배**

문제점② 어느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그 표는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평등선거 원칙 위배**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

▷17대 총선부터 :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 정당 |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 | 정수부분 배정 | 소수점 큰 순서대로 나머지 의석 1석씩 배정 후 |
|----|------|---------|---|---------|----------------------------|
| A당 | 40% | 100 | $54 \times \frac{40}{98} \approx 22.0408$ | 22 | 122 |
| B당 | 25% | 80 | $54 \times \frac{25}{98} \approx 13.7755$ | 13 | 93+1=94 |
| C당 | 15% | 30 | $54 \times \frac{15}{98} \approx 8.2653$ | 8 | 38 |
| D당 | 13% | 20 | $54 \times \frac{13}{98} \approx 7.1632$ | 7 | 27 |
| E당 | 5% | 13 | $54 \times \frac{5}{98} \approx 2.7551$ | 2 | 15+1=16 |
| F당 | 2% | 3 | 붕괴조항으로 배정 無 | | 3 |
| 합계 | 100% | 246 | | | 300 |

*붕괴조항 :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우리나라 :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정당득표 3% 이상)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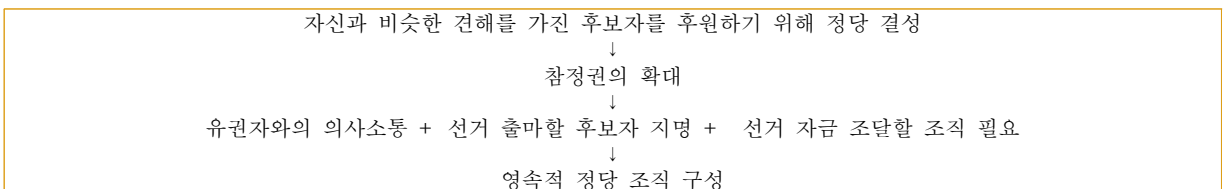
(1)정당과 민주 정치

·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자발적 결사조직

-등장 배경 :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 보통 선거 제도의 등장

▷ 발달 과정



- 특징
 -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 공천
 - ▷ 공익을 추구함
 - ▷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짐
- 중요성 :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 정당의 기능
 - 정치 사회화 기능
 - ▷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 형성
 - ▷ 정치 교육 :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언론 홍보·선전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여론 형성 및 조직 기능
 - ▷ 사회·정치적 논쟁거리에 문제 제기
 - ▷ 정책·공약 개발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대표자 배출 기능 :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함
 - ▷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를 조직하여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
 - ▷ 정당이 없다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누구 뽑을지, 어떤 공약·정책을 지지할지, 공약·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정당이 있어서 선거에서 후보자 배출, 공약개발, 대표선출이 쉬움
 - 정부-의회 매개 기능 :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정책을 조율함
 - 정부 감시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 정당 제도의 유형
 - 구분 기준 :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의 수
 - 종류와 특징

| | | | |
|--------|-----|---|--|
| 일당제 | 의미 | ·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한 개) | |
| | 예시 | ·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 나치당과 같은 독재 정권 | |
| | 문제점 | ·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 정부 기구 통제→독재 가능성이 큼 | |
| 복수 정당제 | 양당제 | 의미 | ·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 |
| | | 장점 | · 정국이 안정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
| | | 단점 | · 유권자의 선택폭 좁음 · 다양한 소수 의견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 발생 가능성 → 양당 간 대립시 중재 어려움 |
| | | 예시 | · 미국(공화당 vs 민주당), 영국(보수당 vs 노동당) 등 |
| | | 의미 |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형태 ·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음 |
| | 다당제 | 장점 | · 소수 이익의 보호 가능 · 정당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 연립내각 수립 |
| | | 단점 | →정국의 불안정 →책임 소재의 불명확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 | | 예시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

-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 현대 정당정치 문제점
 - ▷ 정당의 과두제·관료제화 :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 X
 -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함
 - ▷ 국민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 추구

-우리나라 정당정치 문제점과 과제

| | |
|------------|--|
|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간의 과도한 이합집산으로 인한 짧은 정당 수명 · 특정 정치인에 의해 정당활동이 좌우됨 ·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 조직 및 운영 · 낮은 당비 납부율과 높은 후원금 의존→정경유착 발생 · 정책보다는 인물·지역기반 정당 |
|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상향식 의사결정체제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확립 · 정당활동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

(2)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 이익 집단의 발생

-이익 집단의 의미 :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단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또는 이익의 침해나 불이익의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 행사→‘압력 단체’

-등장 배경 :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짐

→정당만으로는 다양한 의견의 정책 반영이 어려워짐

-종류

- ▷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 ▷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 ▷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단체

·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특징

- ▷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이를 위해 정부에 압력 행사(정보 제공, 정치후원금, 로비, 소송, 언론보도, 파업 등)
- ▷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여 공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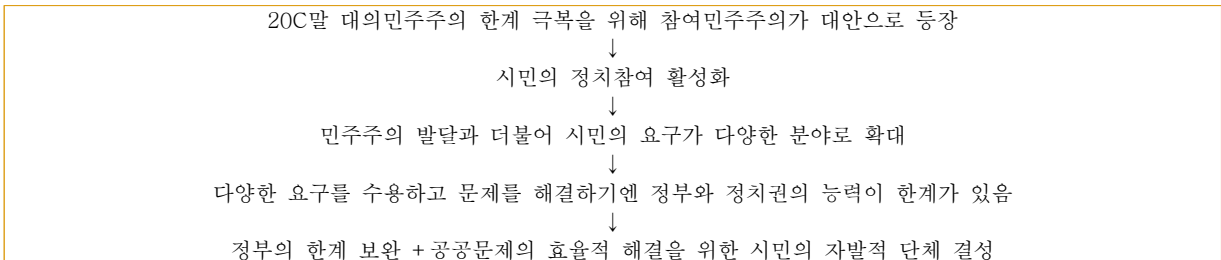
-기능

| | |
|------------|---|
| 순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 |
| 역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익 훼손 · 집단 간 이익 충돌 시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기도 함 · 정부와 특정 이익집단 간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 |

·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시민 단체의 의미 : 공공선과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

-등장 배경



-특징

| | |
|-------------|---------------------------|
| 공익성 | · 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 |
| 자발성 | · 활동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 비영리성 | · 기업(이윤 추구)과 달리 비영리 기구임 |
| 비권력성 | ·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음 → 정당과 구분됨 |
| 비정부성 | ·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활동

- ▷ 등장 : 1990년대
- ▷ 초기 : 주로 선거나 정치개혁 관련 →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자치 등으로 활동영역 확장
- ▷ 현재 : 정치개혁,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국제연대 등 사회 전반에서 사회개선을 위해 폭넓게 활동

-문제점과 과제

| 문제점 | → | 과제 |
|---|---|--|
| · 일부 지도층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 운동' | → | ·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필요 |
| · 열악한 재정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시민단체 활동의 공공성·독립성 해치는 주요 원인 | → | · 지속적 회원 확충을 통해 회비로 재정 충당 |
| · 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 →특수 이익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임 | → | ·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 유지 |
| · 전문성 부족 | → | ·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 · 활동 분야를 핵심 영역 중심으로 선택, 집중해야 함 |

4. 여론과 정치 문화

(1)여론 정치와 언론

·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된 의견

-중요성 :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임

∴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

-문제점

| | |
|------------------------|--|
|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 · 여론의 정확한 파악 곤란 |
| 여론의 유동성 | · 대내외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항상 변해 정책 결정 곤란 |
| 여론의 첨예한 대립 시 | · 한 쪽의 의견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반발로 사회 갈등과 혼란 발생 |

→ 따라서 오늘날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 +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분포 유형

| | |
|------------|---|
| 합의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견해가 동질적이어서 지배적 여론이 형성된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 분산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회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또는 양극단의 의견 비율이 높아 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형성 방식

| | |
|------------|--|
| 상향식 | ·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
| 하향식 | · 공식적 정치 참여자(정부 기관, 행정 관료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

-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 대중 매체 :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매체
 - 기능

| | |
|-----------------|--|
| 순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사회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 대중 교육 기능 + 여론 형성 및 주도 · 국가 권력의 감시 및 비판 · 휴식 및 오락 제공 |
| 역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 조작의 가능성, 왜곡된 사실의 전달 가능성 ·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획일화 · 지나친 상업주의의 확산 · 지배적 규범과 가치 주입 |
| 의제 설정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정보의 선택적 전달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설과 비판 → 여론의 일정한 유도 가능 · 정치적 영향력 행사 :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정치적 쟁점·주체에 대한 주의 환기+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대중의 정치적 태도·선호도가 변화되도록 설득하는 영향력 발휘 |

-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언론의 자유

| | |
|-----------|--|
| 의미 | · 정치권력, 이익 집단, 자본 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
| 의의 | ·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양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견해

| 언론 자유의 제한 | 언론 자유의 보장 |
|--|---|
| · 근거 : 국가 안전 보장 타인의 명예나 권리 존중 사회 윤리 준수 등 | · 근거 :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

-언론의 책임

| | |
|------------|-----------------------|
| 정확성 |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함 |
| 공정성 | ·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함 |
| 공익성 | · 공익을 우선해야 함 |

-언론의 역할 : 중간자적 역할

→ 국민을 대변하여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을 비판·감시하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중립적으로 전달

(2)정치 문화와 법 문화

·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 정치 문화 :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와 정치 문화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와 행동 양식
-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

| | |
|----------------|---|
| 정치적 효능감 | · 의미 :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 ·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 정치적 신뢰감 | · 의미 : 전반적 정치 질서나 정치를 이끌어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믿음 · 신뢰감이 높을수록 제도화된 참여 경향(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높고, 낮을수록 비제도적 집단 행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유형

▷정치적 정향에 따른 분류

| | |
|------------------|---|
| 향리형 정치 문화 | · 특징 : 전문화된 정치역할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정치체계, 투입, 산출, 정치주체에 대한 반응 미약 ·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 신민형 정치 문화 | · 특징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 체계와 그 산출에 대한 반응은 있음 -투입의 측면과 정치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응 정도는 미약 ·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 참여형 정치 문화 | · 특징 -모든 부분에 대해 반응함 -개인은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역할 인식을 가짐 · 현대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정치적 신뢰감 및 효능감이 높음 |

| | 각 정치 문화별 정치 체계, 투입, 산출, 정치 주체에 대한 반응 여부 | | | |
|-----------|---|----|----|-------|
| | 정치 체계 | 투입 | 산출 | 정치 주체 |
| 향리형 정치 문화 | × | × | × | × |
| 신민형 정치 문화 | ○ | × | ○ | × |
| 참여형 정치 문화 | ○ | ○ | ○ | ○ |

(○ : 민감한 반응, × : 반응을 보이지 않음)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른 분류

| | |
|-----------|--|
| 합의적 정치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한 사회 내의 다수가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p style="text-align: center;">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p> |
| 다극적 정치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룸 · 의미 : 한 사회 내의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p style="text-align: center;">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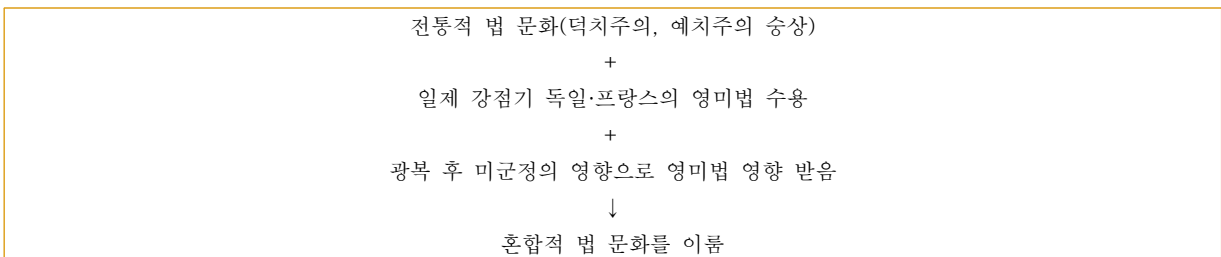
· 특징 :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남

-바람직한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 간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타협의 문화 정착
-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소양 함양
-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함
-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

· 법 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우리나라의 법 문화



-우리나라의 법의식

- ▷ 일제 강점기에 서구법 도입 : 법은 식민통치나 강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란 인식이 강함
- ▷ 권위주의 정권 : 권위적 입법과 집행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립
- ▷ 현재 :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며 사회 정의와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법의식의 함양

- ▷ 중요성 : 법치 사회 구현을 위한
 - 법치 사회 구현에는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함양과 바람직한 법의식 확립 필요
- ▷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

| | |
|------------------|---|
| 법의 올바른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 법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기본권을 보장받기 때문 ∴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국민은 올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입법청원 운동과 감시 운동을 활발히 해야 함 |
| 준법정신 지니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을 국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음 ·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Ⅲ. 우리나라의 헌법

1.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1)헌법의 의의

· 헌법의 의미

- 헌법의 의미 :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규정+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법
- 헌법의 특징

| | |
|-----------------|-------------------------------------|
| 최고성 | ·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 있음 |
| 추상적, 일반적 | ·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룸 |

-헌법 의미의 변화

| | |
|-------------------|--|
| 고유한 의미의 헌법 | ·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 |
|-------------------|--|

+

| | |
|-------------------|---|
| 근대적 의미의 헌법 | ·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 |
|-------------------|---|

+

| | |
|-------------------|--|
| 현대적 의미의 헌법 | ·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 ·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법치 국가의 이념 추구 |
|-------------------|--|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

| | |
|--------------|---|
| 성문 헌법 | · 의미 : 글로 이루어진 헌법(헌법전이 존재함) · 대표적 국가 : 한국, 미국 등 |
| 불문 헌법 | · 의미 : 헌법이 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헌법전이 존재하지 않음) · 대표적 국가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

· 입헌주의의 이해

-의미 : 헌법에 의한 통치

→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

-유형

| | |
|-------------------------------|---|
| 형식적 입헌주의 (외견적 입헌주의) | · 군주의 강대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입헌주의 |
| 실질적 입헌주의 | ·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입헌주의 |

-입헌 질서의 분류

| | |
|---|--|
| 자유주의적 입헌 질서 | · 근대에 강조됨 |
| 복지 국가로서의 입헌 질서 | ·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가 운용되는 등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보장에 기여 · 현대에 중시됨 |
|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

· 헌법의 정치적 의의

- 국가의 창설 : 헌법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목적·내용을 가짐
- 정치 생활 주도 : 헌법은 정치적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의 기준
- 사회 통합 실현 : 헌법은 주권자의 합의된 의사로서 사회 통합의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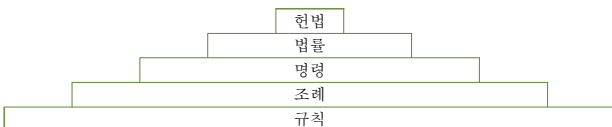
· 헌법의 법적 의의

-최고 규범 :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 +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권력의 작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됨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연결

▷ 쉼튼의 법 단계설



-조직 수권 규범 :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

→ 국가 권력의 조직과 권력의 정당성 등이 헌법에 근거

∴ 모든 권력의 주체는 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음

-권력 제한 규범 : 헌법은 국가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내용을 규정

→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

·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

-1948년 7월 17일 제정 →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음

-현행 헌법의 특징

▷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이 계기가 된 9차 개정의 결과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등 국회 권한 강화

▷ 헌법 재판소 신설 →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과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심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확대, 환경권, 평생 교육권 등 명시 →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자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원리

· 국민 주권주의

-조문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미 :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게 있음

→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간에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권력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출발점이 모두 국민임

-의의 : 민주 정치 구현을 위한 핵심 원리

-실현 방안 : 참정권 보장, 공정선거 제도, 국민투표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 등

· 자유 민주주의

-조문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의미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 자유주의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

▷ 민주주의 :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

-의의 : 국민 주권을 구현하는 원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

-실현 방안 :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 기반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각종 기본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복지 국가의 원리

-조문

| | |
|-------|--|
|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제119조 |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의미 :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리

-등장 배경 : 자유권을 중시하는 근대 헌법이 현대 사회의 모순 해결에는 무기력

→ 빈부격차, 독과점, 경제공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실현 방안 : 사회권 보장,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정책 시행, 최저임금제 채택 등

· 국제 평화주의

-조문

| | |
|-----|--|
| 전문 |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 제5조 | ①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 제6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의미 :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등장 배경 :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짐

-실현 방안 :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 평화 통일 지향

-조문

| | |
|------|---|
|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 제66조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의미 :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 → 국가적 목표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

-실현 방안 :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문화 국가의 원리

-조문

| | |
|------|---------------------------------------|
|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1조 | ⑤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의미 :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 +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

-목적 : 문화를 통해 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실현 방안 : 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보장, 개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배제, 문화 중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평생교육진흥, 의무교육제공

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① 기본권의 의의

·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천부 인권 사상

-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짐
- ▷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
- ▷ 국가는 천부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 문서화함

-기본권의 성격

- ▷ 실정법상의 권리 :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됨 + 국가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 자연법상의 권리 :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음

-저항권(9~10p 참조)

- ▷ 국가가 천부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 가능
- ▷ 예시 : 프랑스혁명, 6월 민주 항쟁 등

· 기본권과 국가 권력

-기본권의 기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 통합,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역할

-국가 권력과 기본권

▷ 국가 권력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함

- ▷ 기본권의 효력 : 국가 권력 구속
- ▷ 국가 권력의 기본권 침해 : 각종 구제제도 실시

② 기본권의 종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 10조)

-조문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미 :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성격

- ▷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
- ▷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 ▷ 기본권 보장의 이념
- ▷ 포괄적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자 궁극적인 목적

-행복추구권 :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인 포괄적 권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결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음

· 평등권(헌법 제 11조)

-조문(붉은 글씨 : 평등권의 종류)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의미

- ▷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 ▷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본질적 기본권
-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 ▷ 민주주의 기본 이념

-우리나라 헌법

- ▷ 법 앞의 평등
- ▷ 교육 기회의 평등
- ▷ 선거권의 평등
- ▷ 노동관계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
- ▷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 ▷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 자유권(헌법 제12~22조) (**붉은 글씨** : 자유권의 종류, **푸른 글씨** : 신체의 자유의 종류)

| | |
|------|--|
| 제12조 | <p>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 <p>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p> <p>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p> <p>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p> |
| 제13조 | <p>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행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p> <p>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소급입법 금지의 원칙)</p> <p>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 금지)</p> |
|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 를 가진다. |
|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를 가진다. |
|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를 가진다. |
| 제20조 | <p>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p> |
| 제21조 | <p>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제22조 | <p>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p> |

-의미: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역사적 배경 :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민 혁명을 통해 보장

-성격

- ▷ 소극적·방어적 권리
- ▷ 포괄적 권리
- ▷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본질적 기본권
- ▷ 국가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

- ▷ 죄형 법정주의
- ▷ 적법 절차의 원리
- ▷ 고문 금지
- ▷ 묵비권
- ▷ 영장 제도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미란다 원칙(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 ▷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
-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 ▷ 형벌 불소급의 원칙
- ▷ 일사 부재리의 원칙
- ▷ 연좌제 금지

· 참정권(헌법 제 24~25조)

-조문(붉은 글씨 : 참정권의 종류)

| | |
|-------------|---|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을 가진다. |
|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을 가진다. |

-의미 :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장 배경 :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선거권 확대 운동의 꾸준한 전개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

-성격

- ▷ 능동적 권리
- ▷ 국가에의 자유
-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종류

- ▷ 선거권
- ▷ 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 ▷ 국민투표권

· 청구권(헌법 제 26~30조)

-조문(붉은 글씨 : 청구권의 종류)

| | |
|-------------|---|
| 제26조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 제27조 |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 보상 청구권) |
|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국가 배상 청구권)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

-의미 : 국가나 개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성격

-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 수단적 기본권

· 사회권(헌법 제 31~36조)

-조문(붉은 글씨 : 사회권의 종류)

| | |
|------|---|
|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

-의미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 평등을 누릴 권리

-등장배경 : 자본주의 경제 발달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성격

- ▷ 국가에 의한 자유
- ▷ 적극적 권리
- ▷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소
-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2)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

-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원리
 - 기본권의 충돌 :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 종류 : 개인 VS 개인, 국가 VS 개인
 - 해결 원리

| | |
|------------------|---|
| 범의 형량(비교 형량)의 원칙 | · 충돌하는 각각의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 우열을 가려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해주는 방법 |
| 규범 조화적 해석 | ·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

- 기본권 침해와 법적 구제
 -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방지 제도 : 권력 분립, 입헌주의에 기초한 통치 체제
 -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 ▷ 입법 기관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제정
 - ▷ 행정 기관 및 사법 기관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 기본권 구제 제도 : 청원, 행정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법률구조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3)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 제한의 조건
 - 조문

| | |
|------|---|
| 제37조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 조건

| | |
|----------|---|
| 국가 안전 보장 | · 의미 : 외부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 예시 : 군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
| 질서 유지 | · 예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 |
| 공공 복리 | · 예시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 수단 : 국회가 제정한 법률
- 한계
 - ▷ 과잉 금지의 원칙 :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함
 - ▷ 어떤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국회

- 국회의 지위
 -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 담당
 -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 최고 기관 중 하나로서 국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담당
- 국회의 구성과 기능
 - 국회의원

| | | |
|---------|------------------------------|--|
| 임기 | · 4년, 연임 및 중임 가능 | |
| 선출방식 | 지역대표(246석) | · 지역구 의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 |
| | 비례대표(54석) | · 정당 투표 결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 |
| 신분상의 특권 | 불체포특권 | · 조문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 | | · 조문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면책특권 | · 조문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의의 | · 국회의 자주성, 국회의원의 지속적 직무수행 보장 | |

-구성 및 운영

| | | |
|-------|--|--|
| 단원제 | · 의미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단일한 합의체 조직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 · 장점 : 의회 권한을 단일한 의회에 집중→활동력 강화 · 단점 -국정 심의 소홀 -독단적 권력 행사 가능성 | |
| 의장단 | · 의장 1인(집권여당) + 부의장 2인(집권여당 1인 + 제1야당 1인) | |
| 주요 기구 | 본회의 | ·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정책 및 법률 결정 · 의미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하는 합의체 · 구분 -상임 위원회(항상 구성) ▷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1개씩 존재(ex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송통신위원회, 법무부 - 법제사법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일정 시기에만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
| | 위원회 | |
| | 교섭단체 | · 의미 : 20인 이상 국회의원으로 구성 · 주로 같은 정당 의원으로 구성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음 |
| 회기 | 정기회 | · 매년 9월 개회, 100일 동안 개회 →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
| | 임시회 | · 수시로 개회(국회제적의원 1/4 이상 또는 대통령 요구시), 30일 이내 개회→국정조사, 법률안 처리 |

-기능

- ▷ 입법 기능 : 헌법 개정안 제출·의결권, 법률의 제·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국회규칙제정권
- ▷ 헌법 기관 구성 기능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3인 추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동의권 행사
- ▷ 국정 감시 및 통제 기능 :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계엄해제요구권, 탄핵소추권
- ▷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기능

-정족수

| | 적용대상 | 출석수 | 찬성수 |
|-------|----------|-----------|------------------------|
| 일반정족수 | 법률안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 |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
| 특별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 | 출석 의원 $\frac{2}{3}$ 이상 |
| | 헌법개정안 발의 | |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
| | 헌법개정안 의결 | | 재적의원 $\frac{2}{3}$ 이상 |

· 의회주의의 위기

-의회주의 :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의사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의미 :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약화 → 의회의 입법기능 약화

-배경

▷ 행정 국가화 현상 :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부가 국정을 주도

▷ 정당 국가화 현상 : 정당이 정치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민의보다 당론을 따름

-문제점 :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 기능을 약화시켜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함

-극복 대안

▷ 정당의 민주화 : 국회의원의 활동이 여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국회 전문성 신장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 신설

▷ 유권자의 정치의식 제고

(2)행정부

·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

-행정의 의미 변화

근대 사회 : 입법·사법과 분리된 '법의 집행' → 입법 및 사법과 대립하는 개념



현대 사회 : 공공복리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

-주요 행정 기구

▷ 대통령 :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 행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짐, 대통령령 발포

▷ 국무총리 : 행정부의 2인자 → 대통령 자리가 공식일 때 권한 대행,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좌

행정 각부를 통할 →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총리령 발포

▷ 국무회의 :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으로 구성

만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

| | | |
|---|--------------------------------|--------------|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
|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제정에 관한 중요사항 | | |
|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 |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8. 영전수여 |
| | | 9. 사면·감형과 복권 |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
| 14. 정당해산의 제소 | | |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 |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 |
|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 |

▷ 행정 각부 : 구체적 행정 사무 집행, 행정 각부령 발포

▷ 감사원 :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 → 행정 기관을 감시·감독

·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하며 중임 불가 →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함
- ▷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한

| | | |
|---------------|---|---|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 모든 행정 작용은 대통령 책임 아래 이루어짐 → 행정부 지휘·감독 -국군통수권(국군은 행정부의 일부인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 |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 |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 선전 포고 및 강화권 ·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 외국 승인권 |
| | 국가의 안위와 헌법 수호를 위한 권한 | ·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긴급 입법권. 법률의 효력을 가짐) · 긴급 명령권(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대통령이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 계엄 선포권(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병력으로 경비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사법 사무를 군의 담당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 ▷ 국무 회의에 의한 통제 :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대통령의 국가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해야 함
- ▷ 각종 자문 기관의 조언을 받아야 함
- ▷ 예산안 확정, 계속비 및 예비비 설치, 추가 경정 예산안 확정, 조약 체결 및 비준, 주요 헌법기관 조직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승인 및 의결을 받아야 함
- ▷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 ▷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 소속 정당에 대한 간접적 통제

(3)법원과 헌법 재판소

· 사법(司法)의 의미

- 의미 :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해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
-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사법권 독립의 의미와 중요성

-조문

| | |
|-------|--|
| 제101조 |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의미 : 외부 기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법원과 법관을 독립시킴
- 목적 : 공정한 재판 실현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종류

| | |
|-------------------|--|
| 법원의 독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간섭 배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관의 겸직 금지 -헌법과 법률로 법원조직 규정 -법관의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의 간섭 배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권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균형 유지 |
| 법관의 독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음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
| 법관의 재판상 독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권의 독립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 · 의미 : 재판을 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 사회단체, 언론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 법원의 조직과 기능

-법원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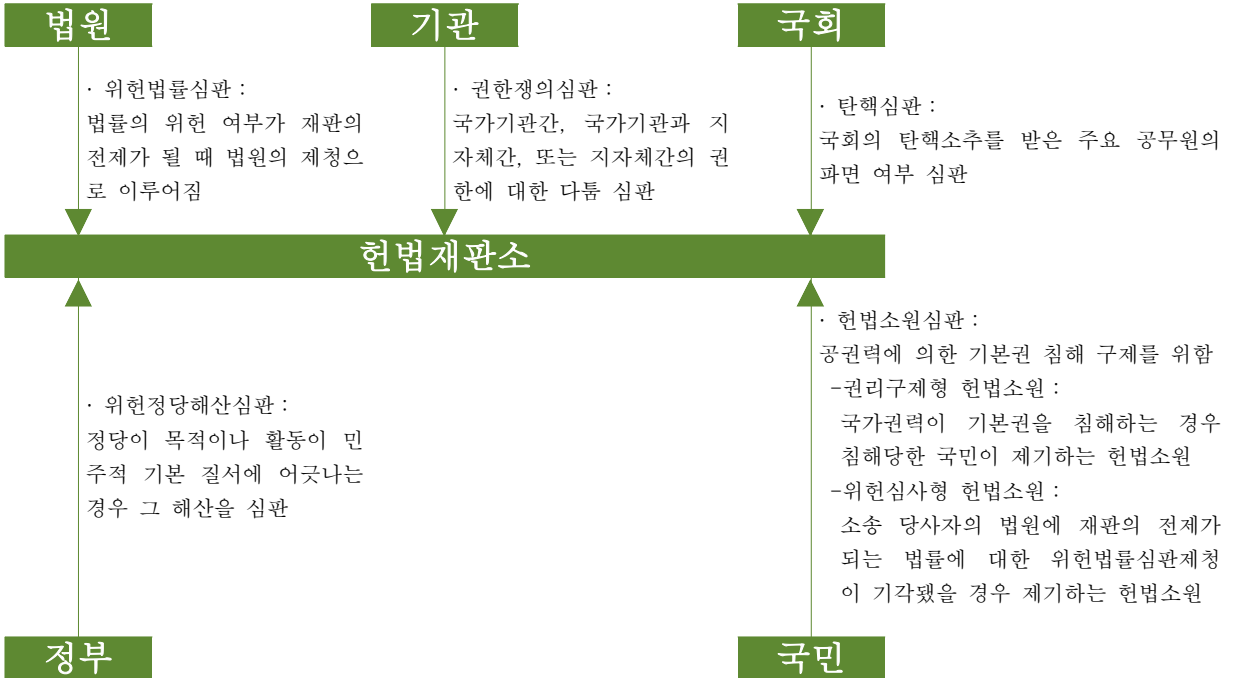
| | |
|-------------|--|
| 대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최고 기관 ·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구성 ·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소송 관할권 -상고심 관할권 |
| 고등법원 | · 권한 : 지방법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 |
| 지방법원 | · 권한 : 제1심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사건 심판 |
| 가정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과 동급 ·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관할 |
| 행정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과 동급 · 서울에만 설치(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대신함) · 행정사건 전담 |
| 특허법원 | · 특허관련 사건 전담 |
| 군사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 ·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구성 |

-재판의 종류

| | |
|--------------|---|
| 민사 재판 | ·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
| 형사 재판 | ·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
| 행정 재판 | · 행정 작용이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 기관을 상대로 행정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
| 선거 재판 | ·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유·무효에 대한 재판 |
| 군사 재판 | ·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

·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기능

- 헌법 재판소의 지위 : 국가가 만든 법률이 허법에 어긋나는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 재판 기관
- 구성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 ▷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가 임명됨
 - ▷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권한(화살표는 청구의 방향)



| 정족수 | |
|----------------|--|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헌법소원심판 · 위헌정당해산심판 |
| 참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쟁의심판 |

IV.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초 이해
2. 계약과 불법 행위
3. 개인 간의 분쟁 해결
4. 생활 속의 법

1. 민법의 기초 이해

(1) 민법의 기본 원리

- 민법의 의미
- 법의 분류

| | |
|---------------------|---|
| 공법 (公法) | · 의미 : 사회적 질서나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 · 예시 : 헌법, 형법, 행정법 등 |
| 사회법 (社會法) | · 의미 :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 · 예시 : 노동법, 경제법 등 |
| 사법 (私法) | · 의미 :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예시 : 민법, 상법 등 |

- 민법의 의의

| | |
|-------------------|--|
| 사법 (私法) | · 의미 :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 ·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공법(公法)과 구별됨 |
| 일반법 | · 의미 :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됨 ·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지역 등에만 적용되는 특별법과 구별됨 |
| 실체법 | · 의미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함 · 권리 실현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과 구별됨 |

- 형성 과정 : 로마 제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던 시민법이 유럽 전체로 퍼져 개인 간 거래와 법적 관계의 규칙으로 자리잡음 →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 →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근대 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됨

- 민법의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 |
|------------|---|
| 법률 | · 의미 : 형식적 의미에서의 민법전을 핵심으로 민법전의 내용을 보충하는 각종 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의한 법률 등)을 지칭 |
| 관습법 | · 의미 : 개인간 생활관계에서 반복된 관행이 사회일반의 법적확신에 의해 구속력을 획득한 규범 · 예시 : 사실혼 부부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 |
| 조리 | · 의미 : 사물의 본성이나 이치 →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에 따른 재판의 불능을 방지할 수 있음 |

·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

| | |
|-------------------------------------|---|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의미 :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 의미 :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 -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선택 등의 자유 |
|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 · 의미 :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한 것 |

- 문제점 :

-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진 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 ▷ 계약 자유의 원칙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의 수단으로 변질됨
- ▷ 과실 책임의 원칙 :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구실이 됨

· 근대 민법 세 가지 원칙의 수정

| | |
|---------------------|--|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 의미 :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 ·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소유권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강조 → 소유권 절대의 원칙 보완 |
| 계약 공정의 원칙 | · 의미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익을 위협해서는 안 됨 ·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무효 +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강조 → 계약 자유의 원칙 보완 |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 의미 :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과실 책임의 원칙과 병존 |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

→ 근대 민법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시 수정된 원칙들을 통해 이전보다 폭넓게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음.

(2)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

-권리 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발생과 소멸 시기

| | 발생 시기 | 소멸 시기 | | | | | | | | | | | | |
|------------|---|--------------------------------------|-----------|-----|------------------------|-----|------------------------------------|-------|---------------------------------------|--|-----|--|----------|---|
| 자연인 | · 출생한 때 -출생의 시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수정설</td> <td>· 수정란도 생명</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임태설</td> <td>· 엄마 뱃속의 아기는 엄연한 법적 주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진통설</td> <td>·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형법상 통설)</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완전노출설</td> <td>·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민법상 통설)</td> </tr> </table> -예외 :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전제 로 권리 능력 인정) | 수정설 | · 수정란도 생명 | 임태설 | · 엄마 뱃속의 아기는 엄연한 법적 주체 | 진통설 |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형법상 통설) | 완전노출설 |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민법상 통설) | · 사망한 때 -사망의 시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뇌사설</td> <td>· 뇌가 회복불능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예외적 인정 : 장기 이식의 필요에 따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 판정위원회가 뇌사 판정을 한 시각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심폐기능 정지설</td> <td>· 심장과 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민법상 통설)</td> </tr> </table> | 뇌사설 | · 뇌가 회복불능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예외적 인정 : 장기 이식의 필요에 따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 판정위원회가 뇌사 판정을 한 시각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심폐기능 정지설 | · 심장과 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민법상 통설) |
| 수정설 | · 수정란도 생명 | | | | | | | | | | | | | |
| 임태설 | · 엄마 뱃속의 아기는 엄연한 법적 주체 | | | | | | | | | | | | | |
| 진통설 |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형법상 통설) | | | | | | | | | | | | | |
| 완전노출설 |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민법상 통설) | | | | | | | | | | | | | |
| 뇌사설 | · 뇌가 회복불능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예외적 인정 : 장기 이식의 필요에 따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 판정위원회가 뇌사 판정을 한 시각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 | | | | | | | | | | | |
| 심폐기능 정지설 | · 심장과 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민법상 통설) | | | | | | | | | | | | | |
| 법인 | ·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때 | · 청산 절차를 밟아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남은 사무를 처리한 때 | | | | | | | | | | | | |

· 의사 능력

-의미 :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

-의사 무능력자 :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여 정해놓지 않음

→ 법률행위 당시의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대체로 젓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은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자 제도

-행위 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 : 일정한 정신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정해 놓은 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행위 무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제한 능력자 제도의 유형

| | |
|-------------|--|
| 미성년자 | · 의미 : 만 19세 미만인 자 ·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예)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특별한 영입, 입금 청구,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유인 행위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

| | |
|--------------------|--|
| 피성년 후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중 가정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신고를 받은 자 · 법률행위 : 일상 행위나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 → 그 외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하며 피성년 후견인 단독으로 한 경우 취소 가능 |
| 피한정 후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 가정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신고를 받은 자 · 법률행위 :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중요한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할 수 있음 |

(2)계약과 불법 행위

· 계약의 의미

- 계약 :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 또는 약속
- 성립 시점 :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효력이 있음

· 계약의 성립 조건

-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 내용상의 성립 조건
 - ▷ 확정성 :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 가능성 : 합의한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함
 - ▷ 적법성 : 합의한 내용이 어겨서는 안 될 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함
 - ▷ 사회적 타당성 : 계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함
- 형식상의 성립 조건 : 유언과 같이 법에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계약서

- ▷ 용도 :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
- ▷ 포함시켜야 할 내용
 - ▶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 ▶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최대한 상세하게
 - ▶ 계약한 날짜와 각자의 서명 또는 도장

-공증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 ▷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 때로는 재판 없이 바로 권리실현을 가능하게 함

·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 ▷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단독 계약 체결 불가→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 |
|-----------------------------|---|
| 확답을 촉구할 권리 (최고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권리 → 응답이 없으면 추인의 효과 발생 →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 (추인 :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
| 철회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의 추인 이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됨 |
| 취소권의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을 맺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

(2) 불법 행위의 이해

· 불법 행위의 개념

-의미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성립 요건

| | |
|---------------|--|
| 가해 행위 |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 가해 행위가 전체 범질서에 위반될 것 →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로 볼 수 없음 -위법성 조각 사유 |
| 위법성 | 정당방위 ·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 긴급피난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 자구행위 ·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고의나 과실 | ·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것 → 원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함 |
| 손해의 발생 | ·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 인과 관계 | ·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 책임 능력 | · 가해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책임 무능력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가위가(과) 손인 책!

· 특수 불법 행위

-의미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유형

| | |
|----------------------------|--|
| 감독자 책임 | · 의미 :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함 · 감독자 스스로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됨 <small>*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 감독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짐</small> |
| 사용자 배상 책임 | · 의미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가짐(피용자에게 자신이 배상한만큼 자신에게 배상할것을 요구 가능) |
|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 · 의미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짐(어떤 경우에도 면책 X) |
| 동물의 점유자 책임 | · 의미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 공동 불법 행위 책임 | · 의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짐 · 가해자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 피해자는 가해자 중 특정 1인이나 가해자 전부에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손해 배상

-의미 :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위법한 경우로 손해를 입는 경우

▷ 불법 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채무 불이행 :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 손해 배상 | |
|-------------|---|
| 원칙 | · 원상 회복 →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 |
| 방법 | ·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청구 가능(정정보도O, 사죄광고X) |
| 후발 손해 배상 인정 | · 배상액 합의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합의된 액수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을 때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 ▷ 분쟁의 성격이 형사적 문제인가, 민사적 문제인가?
- ▷ 자신의 권리가 법적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침해되었는가?
- ▷ 소송이 아니더라도 권리 침해의 수준에 맞게 해결 과정을 간소화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 ▷ 소송 등의 분쟁 해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
→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받을 돈보다 크다면 또 다른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 개인 간의 분쟁 해결

(1)민사 소송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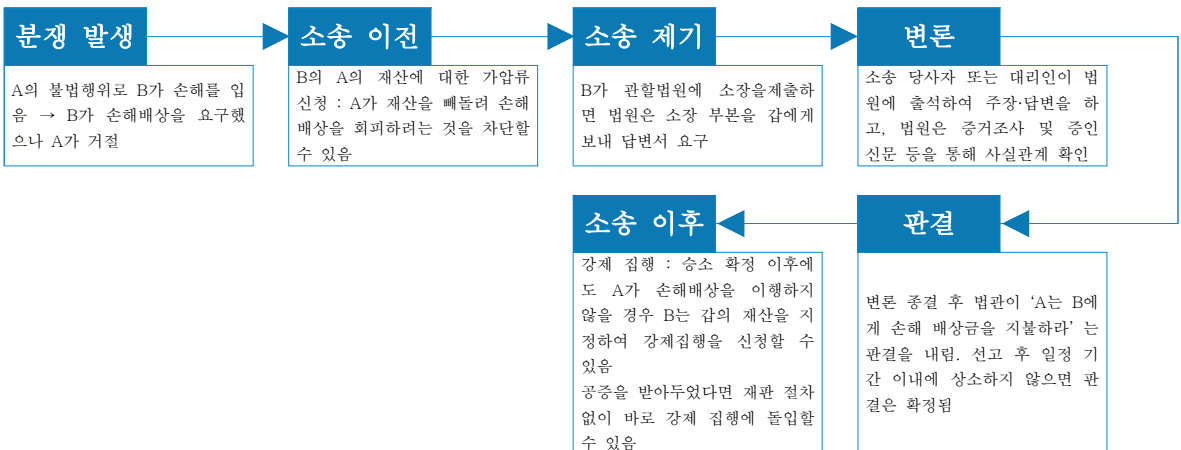
·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 | |
|-------------|---|
| 내용 증명 우편 | · 의미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 · 방법 : 같은 내용의 우편물 3부를 가져가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발송인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보냄 · 의의 : 분쟁 상대방에게 공식적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 |
| 민사 조정 제도 | · 의미 : 소송 이전에 법관·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제도 · 절차 : 법원에 조정 신청서 제출 →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실시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를 작성하여 분쟁 해결 · 조정 불성립시 정식 소송 제기 |
|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 의미 : 2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 정식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제도 · 절차 : 소장 제출 → 가급적 1회 변론으로 신속하게 심리 종결 |

· 민사 소송의 절차

-민사 소송의 개요

- ▷ 의미 :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해 국가가 고유의 재판권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절차
- ▷ 의의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절차



(2)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

- 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
-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 |
|-----------|---|
| 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 · 특징 :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으로 인정됨 · 예시 : 노사 간의 단체 교섭 |
|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협상이 어려울 경우 분쟁과 관련없는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 →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 가짐 -조정안은 강제되지 않음 · 예시 : 민사 조정, 노동 쟁의 조정, 환경 분쟁 조정, 소비자 분쟁 조정 |
| 중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상이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 -중재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은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예시 : 노동 쟁의 중재, 언론 중재 등 |

· 법률 구조 기관들

-법률 구조의 의미와 필요성

- ▷ 의미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 필요성
 - ▶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
 - ▶ 경제적 이유·법적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증가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1978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 · 민·형사 사건 모두 개입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도움 · 법률 구조 서비스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로 이루어짐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최초의 민간법률구조법인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 교육,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음 |
| 대한변호사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한 법률구조희망자가 있으면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원 ·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법률구조사업 실시 |

4. 생활 속의 법

(1)가족 관계와 법

- 출생
 - 출생의 의미 : 권리능력의 발생
 - 친자관계의 발생

| | |
|-----------|---|
| 혼인 중의 출생자 | · 무조건 발생 |
| 혼인 외의 출생자 | ·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음 -인지 :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 ▷ 부모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자녀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 |
| 양자 |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자관계 발생 |

- 출생 시점 :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완전히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때
 - ▷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
- 이름짓기
 - ▷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자만을 사용해야 함
 - ▷ 글자 수는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해야 함
 - ▷ 개명 시에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함
- 출생 신고
 - ▷ 출생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에 기록되어 법적으로 가족의 한 사람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됨
 - ▷ 출생신고를 해야만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결혼
 - 혼인의 의미 : 일종의 계약으로서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사의 합치
 - 혼인의 성립 요건

| | |
|--------|--|
| 실질적 요건 | · 두 사람 모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 결혼했다면 무효 ·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함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19세 미만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음 -남녀 모두 만 19세 이상 : 보호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본인들만의 의사로 혼인할 수 있음 · 결혼 상대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 형식적 요건 | · 혼인 신고 |

- 혼인의 효력
 - ▷ 새로운 친족 관계의 발생
 - ▷ 부부 간 동거와 부양의 의무 발생
 - ▷ 부부 간 일상가사 대리권
 - ▷ 민법상 성년 의제(미성년자에 한하여)
- 사실혼과 동거
 - ▷ 사실혼 :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
→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동거 :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함께 살기만 하는 것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 사실혼 관계에서의 효력 : 상속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 동거와 부양의 의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임차권 승계,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 가능,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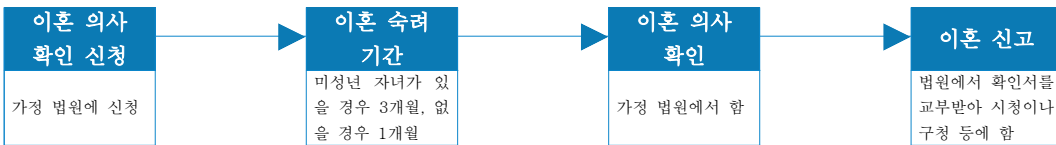
· 가정생활

- 부부 별산제 : 부부가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따로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제도
 - 빚도 별개이므로 어느 한 쪽이 빌린 돈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갚을 의무는 없음
- 일상 가사 대리권 :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 생활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나 일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정에 따른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짐
- 가정폭력
 - ▷ 자녀의 훈육이나 부부간 문제를 사회 문제로 보아 국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함
 - ▷ 가정폭력은 신고 대상으로 경찰에 의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취해짐 → 가해자 격리 및 접근 금지, 사회 봉사 명령, 형, 사처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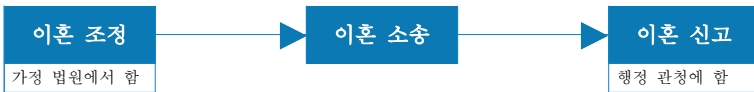
· 이혼

- 의미 :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 이혼의 유형과 절차

협의 이혼 : 부부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이혼의 이유, 원인, 동기를 묻지 않음



재판상 이혼 :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함



-재판상 이혼에서의 법률상 이혼 사유

-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법적 효과

- ▷ 부부간 권리와 의무 및 친족 관계의 소멸
- ▷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면접 교섭권 발생
- ▷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발생
- ▷ 어느 한 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 사망

-사망의 시점

- ▷ 심폐기능 정지설 : 숨이 멎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하는 시점
- ▷ 뇌사설 :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정지되는 시점 → 장기 이식의 경우 엄격한 법적 조건 아래에서만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락하고 있음

-사망의 효과 : 권리능력의 소멸 및 상속의 개시(사망 신고 시점이 권리 능력 소멸 시점이 아님)

· 유언

-요식주의 :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만 법적 효력이 인정됨

-종류

| | |
|----------|--|
| 자필 증서 유언 | ·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함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날인한 경우는 무효, 연월일 중 일부가 누락되어도 무효 |
| 녹음 유언 | · 유언자가 녹음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말함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함 |
| 공정 증서 유언 | ·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함 ·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
| 비밀 증서 유언 |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함 · 유언자가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
| 구수 증서 유언 | ·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방식 ·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함 ·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

-유언의 효력

- ▷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이어야 함
- ▷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함 → 심신 상실이나 혼수 상태의 유언은 무효
- ▷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음 → 유언이 여러개일 경우 최종 유언에 따름
- ▷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

· 상속

-의미 :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대상 : 적극적 재산 + 소극적 재산(빚)

-원칙 :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제외하고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개시됨

-상속 순위



-상속분

- ▷ 균분 상속 : 성별, 혼인 여부, 자연 혈족이나 법정 혈족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음
- ▷ 배우자의 상속분 :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음
- ▷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고인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분보다 일정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 대습 상속 : 직계 비속이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자녀가 1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직계비속이 받을 상속분을 이들이 대신 상속받게 됨

-유류분

- ▷ 의미 : 법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액수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부분
- ▷ 유류분의 보전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했을 때 상속인은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모자랄 때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정 유류분

- ▶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인의 보호

| | |
|------------|---|
| 상속 포기 | · 법정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 한정 승인 | ·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
| 상속 여부의 재결정 | · 뒤늦게 부모의 빚이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상속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부동산과 관련된 법

· 등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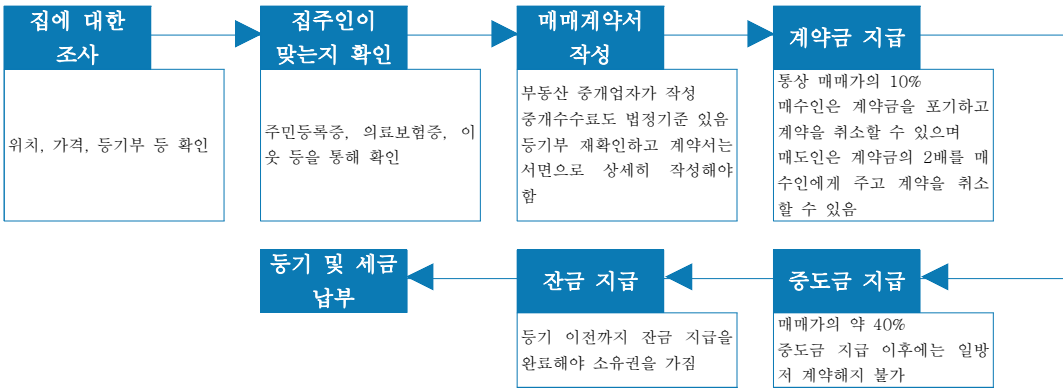
-의미 :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공시 방법

-등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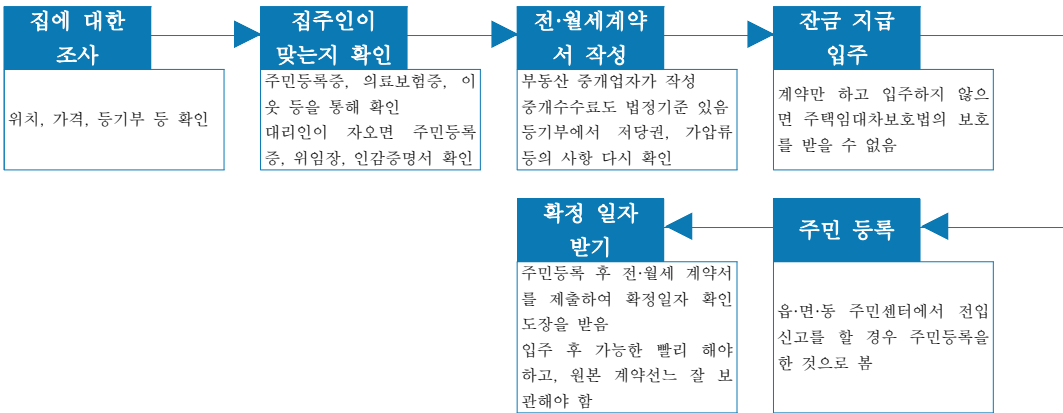
- ▷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서류
- ▷ 누구나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에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
- ▷ 구성

| | |
|-----|--|
| 표제부 | ·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을 기재 |
| 갑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접수된 날짜 순으로 기재 |
| 을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됨(저당권, 전세권 등) *저당권 :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 부동산의 매매



· 부동산의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 ▷ 임대차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 ▷ 대항력 : '입주+ 전입신고' 를 갖추면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 우선변제권 :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
- ▷ 계약의 갱신 :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V. 사회생활과 법

1.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2.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3.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4. 소비자의 권리와 법
5.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1) 형법의 의의

· 범죄와 형벌

- 범죄 :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
- 형벌 :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범죄의 책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법률상 제재 → 법익의 박탈
- 형벌의 본질

| | |
|----------------------|---|
| 범죄에 대한 응보 | · 형벌에 관한 전통적 견해 · 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한다고 보는 입장 |
| 범죄자의 교화 | · 범죄인을 교육하여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육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한다고 보는 입장 |

· 죄형 법정주의

-의미 :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

▷ 형식적 의미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

∴ 법률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 형식이므로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

▷ 실질적 의미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법률의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

→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됨

-의의

▷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 줌

▷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 : 범죄자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형벌과 다른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국가 권력을 통제함

-세부 내용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형벌은 성문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해야 함

▷ 적정성의 원칙 : 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형벌 불소급의 원칙 :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됨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법규의 해석이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함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 구성 요건 :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

▷ 의미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위법성

▷ 의미 :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판단이 가능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

| | |
|----------------|---|
| 정당 행위 | ·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
| 정당 방위 | · 현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
| 긴급 피난 | ·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자구 행위 | ·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피해자의 승낙 | ·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 책임성 :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함
 - ▷ 책임 조각 사유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나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
 - ▷ 책임 경감 사유 : 심신미약자나 농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위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형벌과 보안 처분의 종류
 - 형벌 :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
 - ▷ 종류

| | |
|------------|---|
| 생명형 | · 사형 |
| 자유형 | · 징역(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하여 노동을 시킴) · 금고(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만 시킴) · 구류(30일 미만) |
| 명예형 | · 자격 상실 · 자격 정지 |
| 재산형 | · 벌금(5만원 이상) · 과료(5만원 미만) · 몰수(다른 형벌과 같이 부과) |

- 보안 처분 :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 종류

| | |
|-------------|--|
| 치료감호 |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중 장애가 있거나 마약·알코올 등의 중독 증세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처분 |
| 보호관찰 | ·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 |
| 그 외 | · 전자발찌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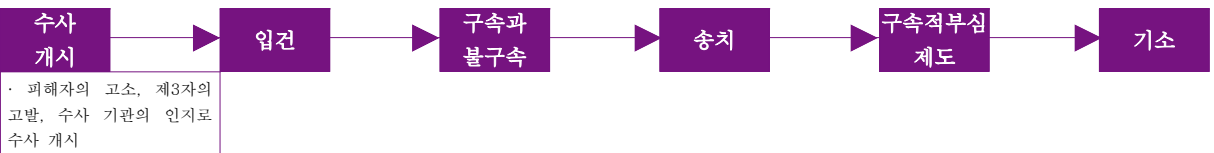
- 보호처분 : 만 19세 미만 소년 대상의 처분
 - ▷ 종류 :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행정벌과 구분됨(행정벌 : 행정단속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해 부과)

(2)형사 절차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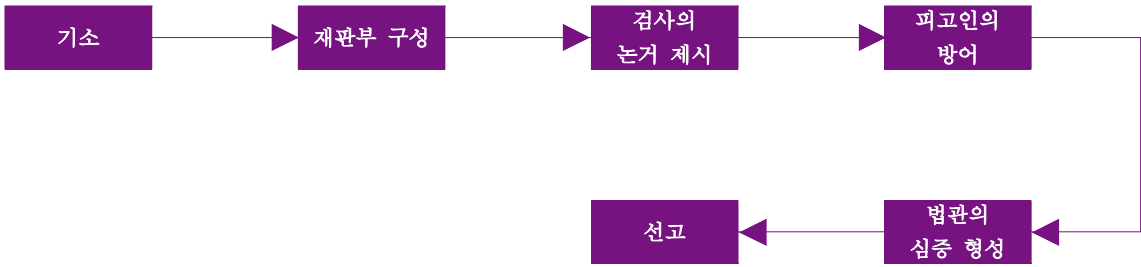
- 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 형사 소송법 :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법
 - 수사 :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수사 대상이 '피의자'
 - ▷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 처분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음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 |
|------------------------------|--|
| 무죄 추정 원칙 | ·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
| 진술 거부권(묵비권) | · 피의자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강요에 의한 진술은 무효 |
|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 | · 영장에 의해 수사 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그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 그 외 |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미란다 원칙 등 |

▷ 수사 절차



- 형사 재판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 형사 재판 절차



-피고인의 권리

- ▷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짐
- ▷ **구속 적부 심사권은 인정되지 않음**
- ▷ 보석 제도(일정한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 석방)는 인정

· 형의 선고와 집행

-형의 선고

| | |
|-------------|---|
| 실형 |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 집행유예 | ·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 |
| 선고유예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 무죄 | ·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

-선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음

- ▷ 항소 : 제1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 ▷ 상고 :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형의 집행 :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

- ▷ 가석방 제도 :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시로 석방

· 즉결 심판과 국민 참여 재판

-즉결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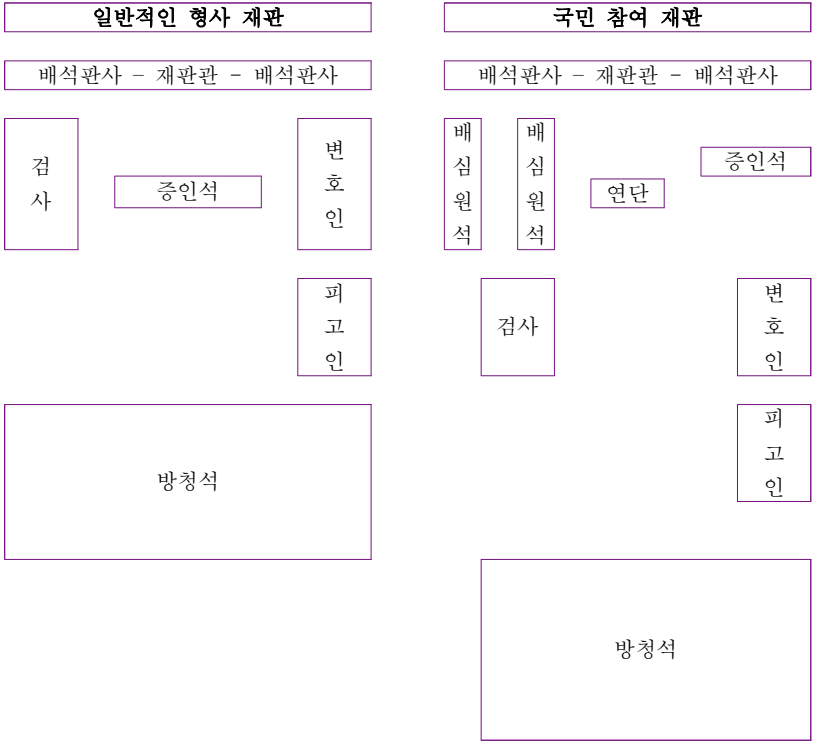
- ▷ 의미 :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이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재판
- ▷ 필요성 : 검찰, 당사자,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킴
- ▷ 절차
 - ▶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
 -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해 경찰 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선고가 가능

-국민 참여 재판 :

- ▷ 의미 : 일반 시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재판관과 토의하는 재판
- ▷ 적용 : 법원 합의부 관할 형사 사건 중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 ▷ 배심원 자격 : 만20세 이상의 국민 중 일정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나 변호사·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
- ▷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재판부에 권고의 효력이 있을 뿐(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음)

→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함

▷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국민 참여 재판의 법정 구성



(3)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형사 보상

·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직계혈족·4촌이내 친척일 경우는 불가

-범죄 피해자 보호 노력

- ▷ 국가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정 → 피해자 상담, 긴급구호,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 시행
- ▷ 민간 : 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

· 형사 보상 제도 및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 의미 :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절차

- ▶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
- ▶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 청구

▷ 특징 :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불가능

-명예 회복 제도

▷ 의미 :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그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

▷ 절차 :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청구

· 배상 명령 제도

- 의미 :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 절차
 - ▷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음

2.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1) 법치 행정과 시민 참여

- 행정 : 공공복리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
- 법치 행정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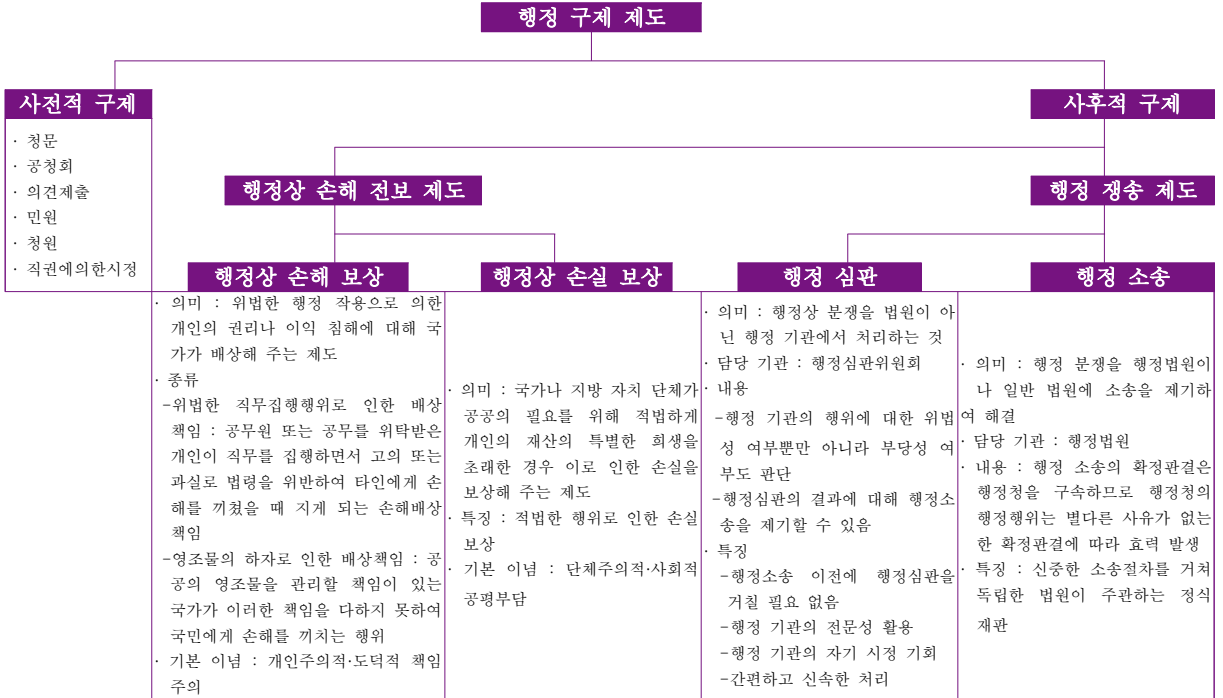
| 행정의 원리 5가지 | | |
|------------|-------|--|
| 법치 행정의 원리 | 의미 | ·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모든 행정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 | 형성 배경 | ·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이를 방지하기 위함 |
| | 특징 | · 행정권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작용을 법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함 |
| 민주 행정의 원리 | 의미 | ·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 | 특징 | ·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름 |
| 복지 행정의 원리 | 의미 | · 행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리 |
| | 특징 | ·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원리 |
| 사법 국가주의 | 의미 | · 별도의 행정 재판을 두지 않고 행정 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는 원리 |
| | 특징 | · 행정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함 |
| 지방 분권주의 | 의미 | ·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각 지방의 살림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원리 |
| | 특징 | · 지방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 필요성 :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합리적 행정 작용을 추구
- 거버넌스(Governance) :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가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변화 →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가능, 행정이 시민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이를 전통적인 통치(Government)와 구분하여 Governance라 부름
-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방법 : 사전적 구제 제도

| | | |
|----------|----|---|
| 청문 | 의미 |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 | 특징 | · 엄격한 진행 방식(구술, 서면) |
| 공청회 | 의미 |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 | 특징 | · 비교적 완화된 진행 방식(발표, 질의 및 답변) |
| 의견 제출 | 의미 |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 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
| | 특징 | · 특별한 진행 방식이 없음 |
| 정보 공개 청구 | 의미 | ·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 공공 기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 |
| | 특징 | · 행정의 공정화·민주화 실현에 이바지 |

(2)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



- 민원
 - 의미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 행정 기관은 민원 사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함
 - ▷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통지 내용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통지해야 함
 - 종류
 - ▷ 일반 민원 : 행정 서류의 발급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등
 - ▷ 고충 민원 :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
 - 우리나라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복합 민원의 처리 :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주요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서로 협조하여 민원 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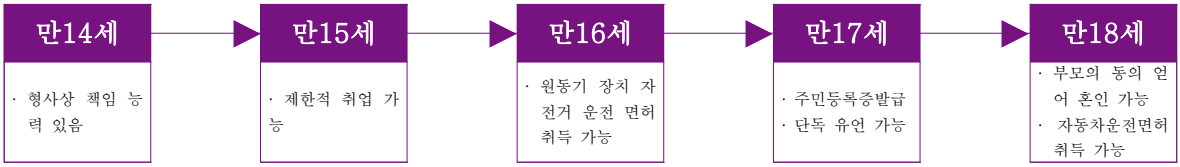
3.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1)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청소년의 법적 보호
 -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청소년기본법)
 - 필요성 : 청소년은 미숙한 인격체→경험과 판단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해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움
 - 관련 법률

| | |
|------------------------|---|
| 청소년기본법 |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청소년보호법 | · 각종 해로운 매체물과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 · 소년법, 근로 기준법 등 |

- 성년 의제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
→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온전한 행위능력 인정)
- 청소년의 연령대별 행위 능력



- 청소년 근로의 보호
 - 만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 만 15세 이상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업 가능 → 법정 대리인 동의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불가
 - 만 18세 미만 : 연소 근로자 →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 시간을 정할 때 특별한 보호를 받음
 - * 만 18세인 미성년자 :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기관을 통해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교 | | |
|-------------------------|---------|------------------|
| | 성인 근로자 | 연소 근로자 |
| 1일 | 8시간 | 7시간 |
| 1주 | 40시간 | 40시간 |
| 연장근로 | 1주 12시간 | 1일 1시간 1주 6시간 |

-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 일반 특례 :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은 몸과 마음이 덜 성장한 상태이므로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임
 - 결정 전 조사 제도 :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 담당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
 - *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판결 전 조사 제도라 함
 - 결정 전 조사 결과 검사가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면 청소년 범죄자도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공소를 제기했다면 보호처분을 받게 됨
 -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사건의 죄질 및 범법 의도를 살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2)학교생활과 법

- 학생의 권리와 의무

| | | |
|----|---|---|
| 권리 | 학습권 | ·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 학생인권 | · 조문 : 교육기본법 제12조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종류 -학교 생활에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학교생활 기록 등의 정보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 의무 | ·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 확립 · 학교 교칙 준수 ·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됨 | |

· 학교 폭력과 법

-학교 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상해, 폭행, 협박, 납치, 명예훼손·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신체적 고통 및 상해를 가할 의도의 행위를 넘어 심리적·언어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

-가해 학생의 처리

▷ 학교 교칙에 따른 징계 또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학급교체, 전학
-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퇴학(초등학생/중학생은 불가 → 의무교육이기 때문)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가능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 만 19세 미만 : 소년법 적용으로 여러 가지 특례 적용. 만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선고 불가

4. 소비자의 권리와 법

(1) 소비자의 권리

·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보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헌법에서 소비자 보호 운동 보장(헌법 제 124조), 소비자 기본법 제정, 필요한 행정 조직 설립·운영(ex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자주적 조직 활동 지원·육성

▷ 사업자 :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소비자의 의견 경청, 피해 발생시 신속·정당한 보상

-소비자의 8대 권리

| | |
|----------------------|--|
| 안전할 권리 | · 모든 물품,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알 권리 | · 물품 및 용역의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선택할 권리 | · 거래 상대방,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 정부 정책,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 교육을 받을 권리 | ·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수호를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권리 |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 소비 과정에서 위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 현명한 경제생활

-오늘날 소비자의 지위 : 국가, 사업자 등과 같이 경제 주체의 하나

▷ 과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소극적으로 국가 등에 구제를 요청하는 보호의 객체
but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경제상황의 변화로 수많은 종류의 피해 발생 → 과거와 같은 수동적 자세로는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명한 경제생활 : 합리적 소비 + 소비자의 역할 충실히 이행하는 것

-소비자 기본법

▷ 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함

▷ 사업자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당당히 말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 필요

-자주적, 합리적,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을 해야 함

(2) 소비자 권리의 보호

·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권리

-문제점

- ▷ 소비자가 상품 품질이나 성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오로지 판매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선전에 의존하여 구매 여부 결정 → 과대광고나 부당 표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 대금 지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품을 받음 → 이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보호

-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소비자보호 위해 청약철회 인정
 - ▶ 청약철회권 : 방문판매(14일 이내 철회 가능),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7일 이내 철회 가능)
 - *불가 사유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훼손·멸실 발생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시
- ▷ 공정 거래 위원회의 전자 상거래 규제

· 제조물 책임과 리콜

-제조물 책임

- ▷ 의미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손해 발생시 제조자나 그 유통 관여자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
- ▷ 인정 요건 :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했다는 사실과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됨
-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제조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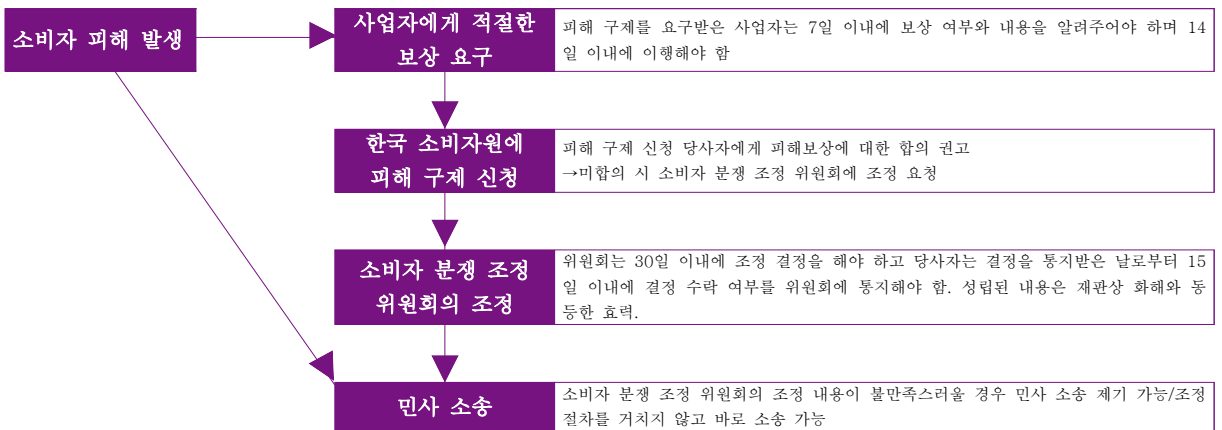
▷ 면제 사유

- ▶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 ▶ 영리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 이외에 판매·대여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아닐 경우
- ▶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때

-리콜 제도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상품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상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

▷ 리콜의 권고와 리콜 명령 제도 : 리콜 제도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줌 → 자발적인 리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에 대한 보완책

·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절차



5,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근로 계약과 노사 협상

- 근로권과 근로 계약
 - 근로권
 - ▷ 의미 :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성격 :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기보다 국가의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봄
 - 근로에 관한 권리 보장 : 헌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명시하게 하고, 근로3권을 보장함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주요 내용 +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합의 포함
 - ▷ 근로 계약의 체결
 -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상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됨 → 법정 기준보다 낮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음
- 노사 간 근로조건 협의와 체결
 - 단결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 측과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사용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해 줌
 - ▷ 노조의 설립과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할 수 있음
 - ▷ 노조는 동종 산업별로도, 직장별로도 조직할 수 있음
 - 단체 교섭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조합원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됨
 - 단체 행동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 단체활동이 정치활동이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 ▷ 폭력 또는 파괴 행위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는 범죄로서 금지됨
 - 근로 3권의 제한
 - ▷ 조문

| | |
|----------------|--|
| 헌법 제33조 |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 |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근로자 권리의 보호

- 근로자의 주요 권리
 - 근로 관계의 종료
 - ▷ 퇴직 : 근로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 엄격한 제한이 뒤따름

|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 |
|----------------------------|--|
| ·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
| - | 해고를 회피하려고 상당 기간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한 경우 |
| - | 해고 대상의 결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함 |
| → | 특히 근로 능력과 무관하게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함 |
| - |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미리 해고 의사를 통보하고 그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을 때 |
| ·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
| · | 최소 30일 전까지 해고 계획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것 |
| · |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 → | 이것들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 해고 |
| ※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 해고와 관련한 정부의 활동 | |
|--------------------------|---|
| 실업 발생 억제력을 위한 노력 | ·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 고용 보험 제도 : 실직했을 때 실업 급여 지급 · 재취업 교육 사업의 지속적 시행 |

· 임금과 근로 시간

-임금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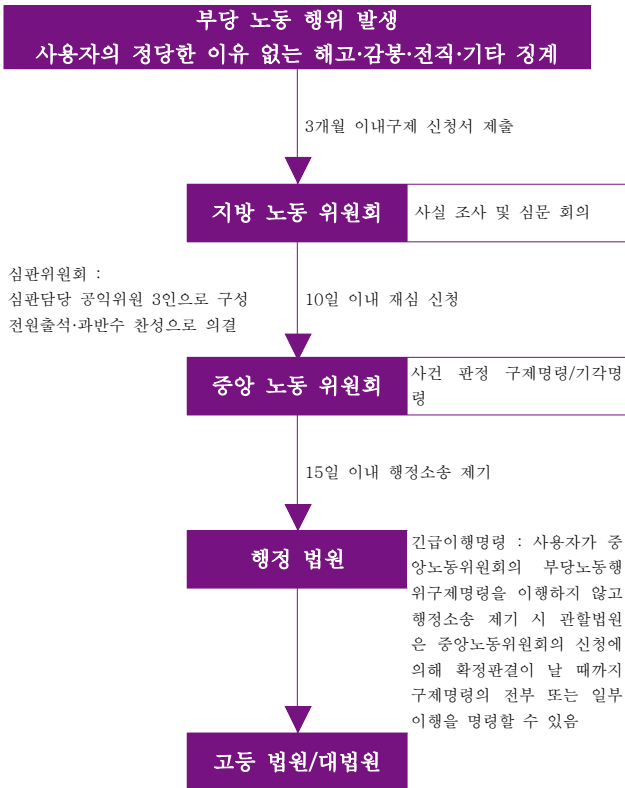
- ▷ 계산 및 지급 방식 : 근로 계약 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 ▷ 반드시 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 ▷ 유통 및 지급 수단으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형태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
- ▷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근로 시간

- ▷ 주 40시간·일 8시간 이내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 가능
- ▷ 휴식시간 : 근로 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시간으로 부여
- ▷ 1주 개근 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인정,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무급 휴일 청구권 인정해야 함
- ▷ 연차 유급 휴가(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 시행
- ▷ 연소자·여성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 준수

· 근로자 권리의 보호 절차

-부당 노동 행위 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감봉·전직·기타 징계의 경우



·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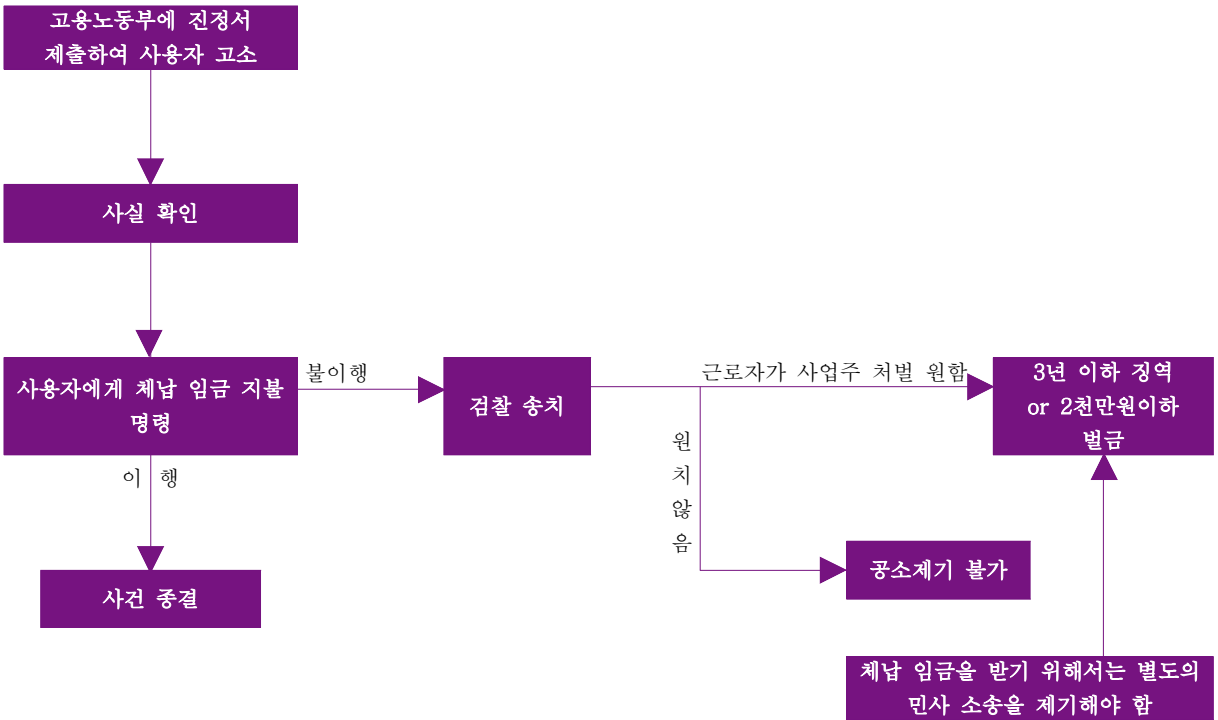
- 의미 :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의 운영 등을 지배·방해하는 행위,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예외 : 노조와의 단체 교섭 시 교섭 담당자가 너무 많아 정상적 교섭이 불가능할 때의 교섭 거부하는 정당함
-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침해구제의 경우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노조 명의로 사건 진정·소송 제기 가능
- ▷ 부당 노동 행위 진정 : 사업장 담당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부당 해고

- 의미 : 정당한 해고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
- 부당 해고 시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청구와는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부당 해고 진정 : 사업장 담당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근로 계약 위반·특정 근로자를 근로조건에서 차별 시에도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구제 가능

-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 노동부와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 노동부를 통한 구제 과정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 ▷ 성희롱 :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 가능
-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계속할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사업주(사업장)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장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지방노동행정기관 내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 가능
-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형사 소송을 거쳐 처벌 불가

VI. 국제 정치와 법

1. 국제 사회의 이해
2. 국제 관계와 국제법
3. 국제 문제와 외교

1. 국제 사회의 이해

(1)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 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의미 :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는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국가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미침

↔국내 사회 : 오직 자기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정치가 미치는 영향도 한 나라 안에 한정됨

-구성 :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며 각국은 평등한 주권을 가짐 → 이들 간의 관계가 국제 관계의 기초가 됨

*주권국가 : 다른 나라나 권력의 간섭 없이 대외적·대내적 최고의 통치권인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

-특성

▷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 →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없음 → 분쟁 해결 어려움 + 특정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적절한 제재 어려움

▷ 규범과 힘의 논리의 공존 : 국제법, 도덕적 규범 등을 존중하면서도 국력차로 인해 힘의 논리가 존재

→국제사회 각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여론, 도덕적규범 등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제약을 가하기도 함.

+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국제 질서 유지와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국제기구 : 2개국 이상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갖는 조직체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
|------------------|----|---|
| 자유주의적 관점 | 전제 | · 인간은 이성적 존재 · 국제 사회에도 도덕과 윤리가 존재함 |
| | 강조 | · 국제법과 국제기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 강조 |
| | 한계 | ·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간과 |
| 현실주의적 관점 | 전제 | · 인간은 이기적 존재 · 국가는 자국을 우선시함 → 흡스식 자연상태 |
| | 강조 | ·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 세력 균형과 군사 동맹 강조 |
| | 한계 | · 국가 간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 경시, 정치적 관점으로 지나치게 단순화 |

| 집단 안보 전략과 세력 균형 전략 | | |
|-----------------------------------|----|--|
| 집단 안보 전략 (Collective Security) | 전제 | · 국가는 도덕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함 |
| | 특징 | ·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안보는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라고 여기고 공격에 대한 집단 차원의 대응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여 침략전쟁을 방지하고자 함 |
| | 예시 | · 국제연합(UN) |
| 세력 균형 전략 (Balance of Power) | 특징 | · 군사력 증강을 통해 적대세력과 힘의 균형을 갖추므로써 침략을 방지하고자 함 · 공동의 적에 대해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을 맺음 |
| | 예시 | ·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
| | | ·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

·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 | |
|-----------------------|---|
|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1648) | · 민족 단위의 독자적 주권국가 등장 · 오늘날과 같은 국제질서 형성 |
| ↓ | ↓ |
| 제국주의 시대 (19~20C초) | ·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 과열 →국제 사회의 무대가 전세계로 확장 |
| ↓ | ↓ |
| 제 1차 세계대전 (1914~1918) | · 국가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대두 →후후 침략전쟁 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목표로 국제 연맹 창설 but 미국·소련 참여 거부로 실질적 영향력 미약 |
| ↓ | ↓ |
| 제 2차 세계대전 (1939~1945) | ·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 연합을 창설 →세계평화유지 및 국제사회번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 ↓ | ↓ |

| | |
|-------|---|
| 양극 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의 팽창정책 : 전세계 공산화 목표로 동유럽국가의 위성국가화 및 중국의 공산화 지원 + 바르샤바조약기구 결성 ▷ 미국의 봉쇄정책 : 트루먼독트린 및 마셜플랜 조직, 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루먼독트린(1947) : 공산화에 직면한 그리스·터키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 *마셜플랜(1947~1951) :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조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닉슨 독트린(람 선언, 1969) :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자제 ▷ 소련·중국 대립, 미·중 관계 개선 ▷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타 선언(1989) : 냉전체제의 종식 선언 ▷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독일 통일, 소련 해체 |
| ↓ | ↓ |
| 다극 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 대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이 협력·의존하고 있음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부흥·경제력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GATT, IMF 등 설립 · 인종·민족·종교·영토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은 여전히 많음 · 인권 문제의 대두 |

(2)국제 사회의 문제

·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 평화와 안보 위협 : 냉전해체 이후 이념대립에 의한 분쟁 감소 but 인종·민족·종교 등에 의한 국지적 분쟁 및 테러 위험 증가
- 빈곤과 경제적 격차 문제 : 세계화 경향의 확산으로 부국-빈국 간 경제적 격차 확대 + 남북문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의 위협 요인
- 환경 문제 :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의 증가 등
- 인권 문제 : 개인의 자유에 대한 탄압,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한 등
- 보건 문제 : 전염병 확산, 생활환경 악화 등

· 국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
 - ▷ 종교의 차이는 신념의 차이에서 유발 → 쉽게 갈등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됨
 - ▷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에 따른 분쟁 : 국가간에 발생, 내전의 형태로 진행
-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
 - ▷ 지하자원을 둘러싼 해당국 간의 자원쟁탈전
 - ▷ 수자원 쟁탈전
 - ▷ 식량 무기화

· 국제 문제가 갖는 특징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 특정국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포괄적 다수에게 무차별적 영향을 미침
-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짐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주체가 모호하거나 주권 범위 외에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
- ∴ 국제사회의 문제를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제사회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

-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 다자 간 공조와 협력 필요
 - ▷ 국제 사회에는 중앙정부가 없고,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임
 - ▷ 국제 문제라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모든 나라의 참여 유도가 힘들
 - 오늘날에는 환경, 보건, 기아 등의 새로운 쟁점 등장 → 이들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가 절실
 - 공조 체제의 구축
 - ▷ UN과 같은 국제기구 창설 → 이를 중심으로 활동함
 - ▷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들은 합리적·실리적 입장을 중시하면서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국제 사회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개인, 국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

2. 국제 관계와 국제법

(1)국제 행위 주체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가 :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이며 독립적 행위 주체
 - ▷ 국가 간에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법률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도 함
 - 초국가적 행위체 :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 행사
 - ▷ 예시 : 국제연합, 초국적기업, 비정부국제기구 등

| | | 국제기구의 유형 |
|--------|----------|--|
| 회원 자격 | 정부간 국제기구 | ·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
| | 비정부 국제기구 |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사면위원회(AI),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
| 지리적 범위 | 세계적 국제기구 | ·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
| | 지역적 국제기구 | ·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
| 기능적 범위 | 포괄적 국제기구 | ·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 |
| | 제한적 국제기구 | ·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통화기금(IMF) 등 |

- 국가 내부적 행위체 :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
 - ▷ 예시 : 지방자치단체, 소수인종, 소수민족, 각종 사회세력
 -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 영향력 있는 개인 :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인물
 - ▷ 강대국의 전직 국가원수, UN 사무총장 등

·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 관계

- 국제 관계 : 국가 간 외교 관계나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
 - but 오늘날 다양한 행위주체의 활동영역 확장 → 전통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던 국제관계의 양상 다양해짐
- 과거 냉전시대 : 미국-구소련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 → 이를 토대로 국제관계 형성
- 탈이데올로기 시대 : 다극 체제 →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변화함
 - +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진행 → 국제적 행위주체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 경제적 협력이 중요해짐 →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 ▷ 국가 간 분쟁이 많아짐 → 국제기구의 분쟁 해결 역할이 주목받음
 - ▷ 환경·인권 등 초국적 문제의 대두 → 국제적 시민운동 단체 활동이 활발해짐

· 국제연합의 역할

- 설립 목적
 - ▷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 절감
 - 국제적 범위의 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적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 비정치적 분야의 활동을 통한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 등장 배경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 절감
 - 1차대전 후 국제연맹 창설 → 강대국 불참·회원국간 의견 대립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 2차대전 후 실질적 권한 갖는 UN(국제연합)창설 →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강대국 주도+ 신생 독립국 참여
 - 실질적 국제기구로 성장

-주요 기구

| | |
|----------------|---|
| 총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형식상 최고의결기구(1국1표제) · 기능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신가입국 승인 등 · 표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안건 :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요 안건 :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 안전보장이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UN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분쟁의 조정절차·방법을 권고 + 권고 효과 없을 시 각종 경제적·군사적 제재 가함 · 구성 :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비상임 이사국(10개국) · 표결 방식 : 각 이사국은 1개 투표권 행사하여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 행사 시 안건 부결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 인권 이사회 · 유네스코(UNESCO) |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 기능 :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
- 구성 : UN 총회 및 안보리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법원(法原) :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
- 대상 : 국제 연합 가맹국(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음
but 구속력 없음

·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 국제 연합의 한계
 - ▷ 안보리의 갖는 거부권 행사 → 안보리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 증폭
 - ▷ 잇따른 국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
 - ▷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연합에서 배제되어 각국 대표들 간 협상으로 해결
 - ▷ 국제연합군의 무력행사가 평화 이념과 모순됨
-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 ▷ 강제적 관할권 없음(예외적 경우 제외하고 한쪽 당사자 청구만으로는 재판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 당사국이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안보리의 조처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쪽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

(2)국제법의 법원

· 국제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

- 국제법 :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법
- 형성 : 국가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
- 종류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판례, 학설

· 조약

- 의미 : 2개 이상의 국가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 → 서로에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협약, 협정, 의정서 등의 명칭으로 존재)

-구분

- ▷ 양자 조약 : 체결 당사국이 2개국
- ▷ 다자 조약 : 체결 당사국이 3개 이상

-우리나라

- ▷ 조약 체결권 : 대통령에게 있음
 - but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국회의 동의를 받드시 얻어야 하는 조약(헌법 제 60조)
 - ▶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 ▶ 우호통상 항해조약
 -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 강화 조약
 -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한·중어업협정 등

· 국제 관습법

-의미 : 국제 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관습 법규

-특성

- ▷ 문서 형식의 합의문은 없어도 됨
- ▷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지만 하면 됨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 발생(포괄적 구속력 가짐)

-종류

- ▷ 외교관의 면책 특권 :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 적용을 받음
- ▷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 ▷ 내정 불간섭의 원칙

· 기타

-법의 일반 원칙

- ▷ 의미 :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 ▷ 원래는 국내법 체계에 적용 → 국제분쟁 해결 시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를 막고자 법원(法原)으로 사용하고 있음
- ▷ 종류
 -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좇아 성실(誠實)하게 해야 함
 -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 행사의 실질적 내용이 권리의 본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됨
 - 권리행사의 목적이 자국에 아무런 이익 없이 순전히 타국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이거나 국제사회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
 - ▶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 국제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짐

-판례 :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 +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을 아우름

→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하고 따르려 함 +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지를 확인

-학설 : 실정법으로서의 국제법이 미비해 그 체계에 공백이 많았던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영향력이 약화됨

-국제기구의 결의

(3)국제법의 특징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 | |
|--------------|--|------------------------------------|
| | 국제법 | 국내법 |
| 제정 |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 | 입법부에 의해 제정 |
| 적용 | 다수 국가 간 | 한 국가의 주권영역 내 |
| 구속력 | 개별 국가에 따라 무시될 수도 있음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의 부재 |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구속력 가짐 →위반 시 처벌받음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우리나라 :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

| 일원론과 이원론 | | | |
|----------|------------------------|------------------------|--|
| | 일원론 | | 이원론 |
| | 국내법 우위론 | 국제법 우위론 | |
| 인식 | 양자는 하나의 체계 | | 양자는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법체계 |
| 입장 | 상호 충돌 발생시 국내법 우선 적용 | 상호 충돌 발생시 국제법 우선 적용 | 국제법-국내법 간 서로 충돌·상호 우열의 문제 X →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국내 입법 필요 |

· 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기능 : 여러 국가 간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국제사회 주체들의 행위기준

-한계 :

- ▷ 입법 기관 X →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약 제정이 어렵고 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도 조정하기 어려움
- ▷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 ▶ 국제법이 실질 규범으로 적용되지 못함
 - ▶ 국제법과 관련된 강제적 법 집행 절차가 없음
→ 국제연합의 주도로 제재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각국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
- ▷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이해관계 반영

3. 국제 문제와 외교

(1)우리나라의 국제 문제

· 통일 문제

-양상 : 당사국은 남북한이지만 미·중·일·러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적 문제

-해결책 : 남북이 상호번영과 공존이라는 통일의 당위성 자각 + 이를 토대로 우리의 통일이 국제평화 증진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적극적 협조 유도

· 환경 문제

-양상 : 국경을 넘어 피해 확산 → 인류의 생존 위협

▷ 예시 : 황사, 중국의 산업폐기물 문제,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

-해결책

- ▷ 국제환경협약등에 적극적 참여
- ▷ 국제기구를 중심점으로 하는 국제적 협력과 외교 등을 통해 주변국의 환경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모색

· 경제 문제

-양상 : 1929 대공황 이후 무역장벽 철폐→국제적 교역 증가를 위해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1944)+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설립→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47) 체결→세계무역기구(WTO) 등장(1995)→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 형성

→국가 간 협력·교류 강화, 세계시장 다극화 / 경제 위기의 위험성 공유

-극복 방안 :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

· 문화 문제

-양상

- ▷ 무역장벽 완화로 문화의 수출·수입의 급증 + 대중매체·여행 등으로 타국 문화의 유입, 유행화
- ▷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국내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음
- ▷ 문제점

- ▶ 우리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 상실 or 문화주권 침해
- ▶ 과도한 자문화 중심주의·문화 사대주의

-해결책 : 개발적·포용적 자세와 상호 존중의 태도

(2)바람직한 외교 정책

· 외교의 의미와 중요성

-외교 :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

- ▷ 주로 한 국가의 안보, 통상, 교역 및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국가 간 혹은 국제적 문제·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외교 변화의 추세

- ▷ 전통적 외교 : 정부(외교관)중심의 공식적 외교
- ▷ 오늘날 :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교류 확대 →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등의 단어 등장(총력 외교 : 모든 채널을 동원)

-중요성 : 자국의 대외적 위상 상승, 정치·경제적 이익 획득

→ 외교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면 국익 손실 + 국제사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 사회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

-외교 정책 : 외교를 통해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 결정 과정에서 국가 내부적 상황과 국가, 국제기구, 국가 간 역학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 외교의 전개 과정

| | |
|--------------|---|
| 광복~1960년대 | · 반공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미국에 의존(친미반공외교) |
| 1960년대 후반 이후 | · 제3세계 국가(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전개 · 비적대적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선언(1973. 6. 23 6.23 선언) |
| 1980년대 후반 이후 | · 미국 중심 외교정책 변경 · 실리외교 표방 → 공산권 국가와도 수교(북방 외교 추진) |
| 2000년대 이후 | · 정상회담 등 남북 긴장 완화 노력 · 국제사회 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 |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때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의 공존을 달성할 수 있음

(3)국제 사회의 법적 문제

· 국제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법적 문제

-유형

- ▷ FTA 체결 : 상대국과의 무역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의 제·개정 필요
- ▷ 교도의정서 체결 : 국내법규를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함
- ▷ 국내의 상품 간 특허·디자인 분쟁 증가 : 국내 지적재산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변경해야 함
- 전지구적 교류 증가로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 작업 요구 + 국제분쟁의 비약적 증가
- ∴ 해결책 : 소송제도나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 + 이를 전담할 전문법조인 양성 필요

·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

-오늘날의 세계 :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음 → 특정 지역의 사건·현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침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

- ▷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져야 함
- ▷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보편적 인권존중의 의식을 함양해야 함

